

서울특별시의회

의안
번호

570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3.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I.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과 제안경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5조¹⁾ 및 「지방재정법」 제45조²⁾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여건과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³⁾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난 3월 15일 제출함에 따라 3월 27일 소관 교육위원회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II.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조 8,915억 2,100만원 보다 △0.1%, △117억 1,400만원을 감액한 12조 8,798억 70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표 2-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 감 현 황		재 원 구 분	
		증감액(A-B)	증 감 륜	일 반 재 원	목적지정재원
12,879,807	12,891,521	△11,714	△0.1	△27,968	16,254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2

- 1)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2)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3) ■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0.1% 범위 내) 차이 있음

- **세입예산**은 일반재원 △279억 6,800만원을 감액하고, 목적지정재원은 162억 5,4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117억 1,4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바,

〈표 2-2〉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내역		재원구분		
			증감액 (A-B)	증감률	일반재원	목적지정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계	12,879,807	12,891,521	△11,714	△0.1	△27,968	16,254	0
이전수입	11,352,649	11,364,363	△11,714	△0.1	△27,968	16,254	0
중앙정부이전수입	7,156,804	7,184,207	△27,403	△0.4	△27,968	565	0
자치단체이전수입	4,187,778	4,172,089	15,689	0.4	0	15,689	0
기타이전수입	8,067	8,067	0	0.0	0	0	0
자체수입	126,383	126,383	0	0.0	0	0	0
전년도이월금	1,385,345	1,385,345	0	0.0	0	0	0
금융자산회수	15,430	15,430	0	0.0	0	0	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2580 ('23. 3.22)

- **일반재원**의 경우, '23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통지('23. 2.23)⁴⁾에 따라 중앙정부이전수입중 보통교부금을 △279억 6,800만원 감액편성 요청하고,
- **목적지정재원**의 경우, 회계연도중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재원에 대해 ① 「지방재정법」 제45조⁵⁾ 및

4)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171('23. 2.23),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통지”

5)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예산총칙에⁶⁾ 따라 우선확정한 162억 5,4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⁷⁾,

- 중앙정부이전수입중 특별교부금 5억 6,500만원은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 사업으로 ’23. 1월 교부된 것이며⁸⁾
- 자치단체이전수입중 비법정이전수입 156억 8,900만원은 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친환경 급식비 보조금(’23년도 1~2월분)이 ’23. 1월중 서울시⁹⁾와 각 자치구¹⁰⁾로부터 통보되어 우선확정한 것임

○ **세출예산**은 △117억 1,400만원을 감액편성 제출한 바,

- ’23년도 세출예산중 예비비 및 기타에 편성된 내부유보금을 △2,664억 5,900만원 감액하여 세입감액분(중앙정부이전수입중 보통교부금 감액) △279억 6,800만원을 보전하고, 2,384억 9,100만원은 세출재원으로 경정한 것으로,
- **경상비**는 공립학교운영비 82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6)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p.3

<예산총칙> 제9조 ①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7) 목적지정재원(162억 5,4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예산총칙」제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전에 우선 사용하게 하고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 우선확정분으로 전부 구성됨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02(’23. 2. 6), “특별교부금(국가지책)추경성립전 우선사용확정 및 배정통지(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지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441(’23. 1.16),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추경성립전 우선사용 확정 및 배정통지(2023.1~2월 친환경 학교 및 유치원급식비)”

8)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06(’23. 1.10), “학생 정신건강 지원 관련 2023년 제1차 국가지책 특별교부금 교부금액 안내”

9) ■ 93억 8,900만원 : 서울특별시, 친환경급식과-359(’23. 1.11), “2023년 1~2월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보조금 교부계획 통보”

■ 62억 9,900만원 : 서울특별시, 친환경급식과-369(’23. 1.11), “2023년 1~2월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 보조금 교부계획 통보”

10) 25개 자치구별로 ’23. 1월중 전부 통보됨

- **교육사업비**는 ①‘디벗’ 스마트기기 구매 292억 9,200만원, ②전자철판 설치 240억 3,000만원, ③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105억 4,000만원, ④우리가 꿈꾸는 교실 학급운영 지원 82억 6,700만원, ⑤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 62억 8,300만원, ⑥서울형 메타버스 및 원격수업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46억 1,800만원, ⑦그린스마트스쿨 사전기획용역 및 긴급보수비등 36억 1,200만원을 증액 요청하고, ⑧초등 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250억 2,500만원 순증, ⑨’23년도 1~2월분 친환경학교(유치원) 급식비 우선확정예산 등 총 1,377억 7,2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시설사업비**는 ①학교교육환경개선중 석면제거 334억 1,100만원, ②학교 시설환경개선 7억 9,900만원, ③학교급식환경개선 3억 6,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45억 7,3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고,

- **예비비 및 기타**는 내부유보금(5,688억 900만원)중 △2,664억 5,9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2-3〉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내 역		재 원 구 분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증감액 (C=A-B)	증감률 (C/B)	일 재 반 원	목 적 지 정	
										우 확	선 정
합 계			12,879,807	100.0	12,891,521	100.0	△11,714	△0.1	△27,968	16,254	0
인건비	계		6,734,878	52.3	6,734,878	52.2	0	0.0	0	0	0
	공무원인건비		4,496,371	34.9	4,496,371	34.9	0	0.0	0	0	0
	계약제교원근로자 및 교육공무직원인건비		927,005	7.2	927,005	7.2	0	0.0	0	0	0
	사립학교인건비		1,311,502	10.2	1,311,502	10.1	0	0.0	0	0	0
경상비	계		1,053,820	8.2	971,420	7.5	82,400	8.5	82,400	0	0
	교육행정기관 운 영 비		39,303	0.3	39,303	0.3	0	0.0	0	0	0
	학 교 운 영 비	소 계	1,014,517	7.9	932,117	7.2	82,400	8.8	82,400	0	0
		공 립	741,137	5.8	658,737	5.1	82,400	12.5	82,400	0	0
		사 립	273,380	2.1	273,380	2.1	0	0.0	0	0	0
사업비	계		3,534,268	27.4	3,361,923	26.1	172,345	5.1	156,091	16,254	0
	교 육 사 업 비		2,486,952	19.3	2,349,180	18.2	137,772	5.9	121,518	16,254	0
	시 설 사 업 비	소 계	1,047,316	8.1	1,012,743	7.9	34,573	3.4	34,573	0	0
		학 교 신 증 설	62,121	0.5	62,121	0.5	0	0.0	0	0	0
		일 반 설	916,118	7.1	881,907	6.9	34,211	3.9	34,211	0	0
		급 식 설	69,077	0.5	68,715	0.5	362	0.5	362	0	0
재 무 활 동	계		1,234,491	9.6	1,234,491	9.6	0	0.0	0	0	0
	지방채상환등		52	0.0	52	0.0	0	0.0	0	0	0
	B T L 상 환		0	0.0	0	0.0	0	0.0	0	0	0
	기금전출금		1,234,439	9.6	1,234,439	9.6	0	0.0	0	0	0
예 비 비 및 기 타			322,350	2.5	588,809	4.6	△266,459	△45.3	△266,459	0	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2580 ('23. 3.22)

Ⅲ. 세입예산 관련 검토

1.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¹¹⁾에 따라 전입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과 국고보조금¹²⁾ 및 특별 회계전입금¹³⁾으로 구성됨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만 교부되어 기 정예산(7조 1,842억 700만원) 대비 △0.4%, 274억 300만원을 감액 한 7조 1,568억 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경정 요청한 것임

〈표 3-1〉 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 감 액 (C=A-B)	증 감 륜 (C/B)	재 원 구 분		
					일반재원	목 적 지 정 재 원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 계	7,156,804	7,184,207	△27,403	△0.4	△27,968	565	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645,078	6,672,481	△27,403	△0.4	△27,968	565	0
보 통 교 부 금	6,362,252	6,390,221	△27,968	△0.4	△27,968	0	0
특 별 교 부 금	120,071	119,506	565	0.5	0	565	0
증 액 교 부 금	162,753	162,753	0	0.0	0	0	0
국 고 보 조 금	21,225	21,225	0	0.0	0	0	0
특별회계전입금	490,501	490,501	0	0.0	0	0	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2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 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②, ③ 생략)
-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12) 국고보조금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임

13) 특별회계전입금 :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하여 교육세 일부 및 별도 예산에서 정하는 정부 일반 회계 지원금을 재원으로 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교부하는 재원임

(1) 보통교부금

○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¹⁴⁾에 따라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는 재원인 바,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통교부금**은 기정예산(6조 3,902억 2,100만원)보다 △0.4%, △279억 6,800만원 감액된 6조 3,622억 5,200만원으로 조정요청한 것으로 지난 2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통지¹⁵⁾에 따라 감교부된 △279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3-2〉 보통교부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1 회 추 경	기 정 액	합 계	변 동 률
△27,968	6,390,221	6,362,252	△0.4

※ 자료근거 :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35

○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¹⁶⁾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기준재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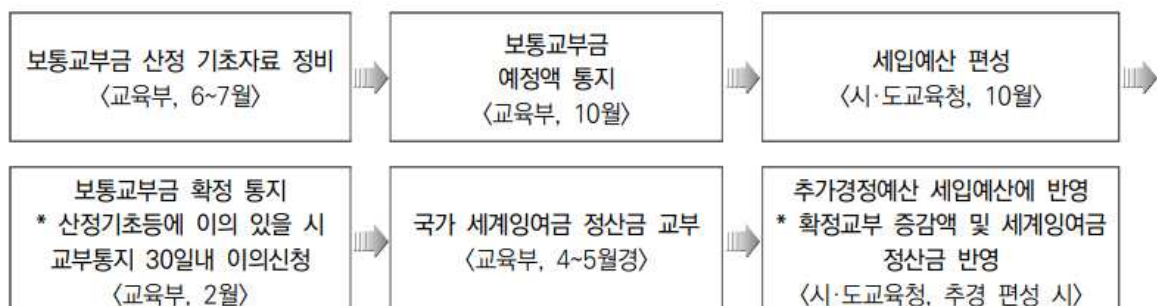
15)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171('23. 2.23),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통지”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당해 시·도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의 이해」('20.12) p.18

2. 보통교부금 업무흐름도



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정산한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을 시·도 교육청으로 통보하고, 서울시교육청 또한 회계연도 개시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을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최근 5년간('18~'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이 감액된 사례가 없어 금년도의 경우도 교육부로부터 추가교부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지난 2월 23일 교육부로부터 △279억 6,800만원이 감액통보된 바,

〈표 3-3〉 최근 5년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앙정부·자치단체이전수입 증액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년	도	1 회 추 경 제 안 일 자	본 예 산 대 비 증 감 17)			
			중 앙 정 부 이 전 수 입		자 치 단 체 이 전 수 입	
			증 감 액	증 감 율	증 감 액	증 감 율
2023		3.15	△27,403	△0.4	15,689	0.4
2022		3.17	50,629 ^{주1)}	0.8	0	0.0
2021		5.25	224,269	3.9	800,665	22.2
2020		3.19	38,692	0.7	500	0.0
2019		5.24	1,035,614	19.3	481,699	15.2
2018		5.31	599,287	11.5	123,567	4.0

※ 주1) 2022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추가교부액(3,945억원) 중 일부만(506억원) 편성

- 회계연도 개시이후 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지방교육자치단체로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17)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앙정부·자치단체이전수입 경정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1			2020			2019			2018		
	본예산 (A)	회계경 (B)	증 감 (B-A)	본예산 (A)	회계경 (B)	증 감 (B-A)	본예산 (A)	회계경 (B)	증 감 (B-A)	본예산 (A)	회계경 (B)	증 감 (B-A)	본예산 (A)	회계경 (B)	증 감 (B-A)
중앙정부 이전수입	60652	617741	50629 (0.8)	574355	597224	2229 (3.9)	591143	595095	3862 (0.7)	537353	648967	105614 (19.3)	52502	532429	599287 (11.5)
자치단체 이전수입	405133	405133	0 (0)	308550	406215	80065 (22.2)	348476	348976	500 (0.0)	316444	351143	481699 (15.2)	31028	322845	123567 (4.0)

- 보통교부금이 감액통보된 것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중 교직원인건비¹⁸⁾로 인하여 감액된 것으로 추정되어 세입경정요인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추가교부가 아닌 △279억 6,800만원이 감액교부된 것은 예측오류의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난 결과일 수 밖에 없어 세입경정요인에 대한 정밀한 추계를 바탕으로 교육예산의 안정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8) 교직원인건비 : 교원인건비 △612억원, 교육공무직원인건비 167억원

〈표 3-4〉 보통교부금 세부 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측정항목		2023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A)	2023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B)	증 감 내역		
					증 감 액 (C=A-B)	증 감 륜 (C / B)	
보통교부금 ① - ② + ③			6,362,253	6,390,221	△27,968	△0.4	
기준 재정 수요 ①	합 계		11,779,165	11,798,149	△18,984	△0.2	
	교직원인건비		6,605,050	6,649,475	△44,425	△0.7	
	학교운영비		1,963,080	1,921,625	41,455	2.2	
	교육행정비		103,316	105,266	△1,950	△1.9	
	교육복지지원비		264,060	250,393	13,667	5.5	
	교육기관등시설비		873,712	869,811	3,901	0.4	
	유아교육비		86,749	88,922	△2,173	△2.4	
	방과후학교사업비		84,515	84,528	△13	0.0	
	고교무상교육지원		178,011	182,701	△4,690	△2.6	
	재정결함보전		1,619,556	1,649,312	△29,756	△1.8	
	자 체 노 력 수 요	소 계		1,116	△3,884	5,000	△128.7
		학교통폐합및신설대체지원		6,000	1,000	5,000	500.0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5,116	5,116	0	0.0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이월률과 불용률)		△11,000	△11,000	0	0.0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상반기예산집행비율)		1,000	1,000	0	0.0
기준 재정 수입 ②	합 계		5,416,908	5,407,928	8,980	0.2	
	법 정 전 입 금	소 계	5,238,897	5,225,227	13,670	0.3	
		지방교육세	2,339,602	2,339,602	0	0.0	
		시·도세	2,417,080	2,417,080	0	0.0	
		담배소비세	302,323	302,323	0	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14,152	116,298	△2,146	△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장년분)	4,809	4,809	0	0.0	
		균특회계시도전환사업보전분	36,209	36,228	△19	△0.1	
		국가사업의시도이양사업보전분	24,722	8,887	15,835	178.2	
		고교무상교육증액교부금	162,753	165,301	△2,548	△1.5	
	고교무상교육전입금		15,258	17,400	△2,142	△12.3	
	감사결과반영 ③			△4	0	△4	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2580 ('23. 3.22)

(2) 특별교부금

-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¹⁹⁾에 따라 교육부가 국가지책사업·지역교육현안·재해대책에 대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인 바,

〈표 3-5〉 특별교부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1 회 추 경	기 정 액	합 계	변 동 률
565	119,506	120,071	0.5

※ 자료근거 :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36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특별교부금**은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 사업 5억 6,500만원이 교부되어 기정예산(1,195억 600만원) 보다 0.5%, 5억 6,500만원 증액된 1,200억 7,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지방재정법」²⁰⁾에 따라 우선확정('23. 2. 6)하고 이를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임

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지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20)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 바,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중 비법정이전수입만 통보되어 기정예산액(4조 1,720억 8,900만원) 보다 0.4%, 156억 8,900만원이 증액된 4조 1,877억 7,8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임

〈표 3-6〉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 산 안 (A)	기 정 예 산 (B)	증 감 내 역		재 원	구 분		
					증 감 액 (C=A-B)	증 감 륜 (C / B)		일반재원	목 적 지 정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 계			4,187,778	4,172,089	15,689	0.4	0	15,689	0	
법 정 이 전 수 입			4,138,184	4,138,184	0	0	0	0	0	
	지 방 세 계		3,994,217	3,994,217	0	0	0	0	0	
	전	지방교육세입금	1,926,002	1,926,002	0	0	0	0	0	
		담배소비세입금	261,992	261,992	0	0	0	0	0	
		시도세입금	1,806,223	1,806,223	0	0	0	0	0	
	학 교 용 지 일반회계부담금		1,988	1,988	0	0	0	0	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16,297	116,297	0	0	0	0	0	
	교육급여보조금		10,424	10,424	0	0	0	0	0	
	전	무상교육경비입금	15,258	15,258	0	0	0	0	0	
		비법정이전수입		49,594	33,905	15,689	46.3	0	15,689	0
		전	광역자치단체입금	30,515	21,125	9,389	44.4	0	9,389	0
기초자치단체입금			19,079	12,780	6,299	49.3	0	6,299	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2

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3 생략)

(1) 비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2) 및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3)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가 교육청으로 진출하는 재원 중 우선확정분 156억 8,900만원을 편성한 것인 바,
-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의 경우, 기정예산(211억 2,500만원) 보다 93억 8,9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 교육지원사업과 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무상급식비 93억 8,900만원을 우선확정하고, 세입예산안에 편성한 것임
-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자치구가 지원한 무상급식비 62억 9,900만원을 우선확정하고, 세입예산안에 편성한 것임

〈표 3-7〉 우선확정사용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세 세 부 사 업	사 업 내 역	우 선 확 정 액	우선확정일자
학교급식운영	무 상 급 식 (서울시전입금)	친환경 학교 및 유치원급식(1~2월)	9,389	'23. 1.16
학교급식운영	무 상 급 식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친환경 학교 및 유치원급식(1~2월)	6,299	'23. 1.1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2580 ('23. 3.22)

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진출할 수 있다.

23)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V. 세출예산 관련 검토

1. 세출예산 증액 관련

(1) 일반재원 증액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재원 증액 편성액은 2,384억 9,100만원으로, 내부유보금중 △2,664억 5,900만원을 감액하여 세입감액분(보통교부금 감액분 △279억 6,800만원)을 보전(279억 6,800만원)하고, 33개 세세부사업²⁴⁾에 2,384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표 4-1〉 세출예산중 내부유보금으로 일반재원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내부유보금 (A+B)	세출예산중 일반재원 편성액					보통교부금 감액보전 (B)
	소계 (A=a+b+c+d)	학교운영비 (a)	교육사업비 (b)	일반시설 (c)	급식시설 (d)	
266,459	238,491	82,400	121,518	34,211	362	27,96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4
 - 교육사업비중 목적지정재원인 우선확정분 162억 5,400만원은 내부유보금 재원이 아니므로 미포함

24) 「내부유보금」을 제외한 36개 세출 세세부사업중 목적지정재원인 「학교안전망구축(특별교부금)」, 「무상급식」과 증감예산액이 0원인 「학교청소관리」를 제외한 33개 세세부사업

〈표 4-2A〉 일반재원 주요 증액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부 서	세 부 사 업	사 업 내 역	추 경 증 액
대 변 인	교 육 정 책 홍 보	공 익 캠페인 및 시책홍보	400
정책안전기획관	교육정책기획관리	교 육 정 책 개 발 운 영	433
	교육정책기획관리	정 책 총 량 관 리	9
예산담당관	학 교 운 영 비 지원	학 교 기 본 운 영 비	82,399
	예 산 관 리	주 민 참 여 예 산 운 영	1,327
참여협력담당관	교 육 복 지 우 선 지원	서 울 미 래 교 육 지 구 운 영	11,489
	교 육 복 지 우 선 지원	학 교 협 동 조 합 활 성 화 지 원	156
노사협력담당관	교 직 원 단 체 관 리	공 무 원 노 사 관 리	135
	교 직 원 단 체 관 리	교 원 노 사 관 리	164
교 육 혁 신 과	교 육 과 정 운 영 지원	생 태 전 환 교 육 내 실 화	1,242
	교 육 과 정 운 영 지원	수 학 교 육 지 원	50
	특색교육과정운영	학 교 혁 신 기 획 운 영	6,283
	특색교육과정운영	혁 신 학 교 운 영	52
유 아 교 육 과	사 립 유 치 원 지원	공 영 형 사 립 유 치 원 운 영 지원	1,855
초 등 교 육 과	교 원 연 수 운 영	초 등 교 장 자 격 연 수	192
	교 육 과 정 운 영 지원	창 의 공 감 교 육 과 정 운 영	8,267
	돌 봄 교 실 운 영	초 등 돌 봄 교 실 운 영	25,025

〈표 4-2B〉 일반재원 주요 증액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부 서	세 부 사 업	사 업 내 역	추 경 증 액
중 등 교 육 과	교 원 연 수 운 영	교 육 실 습 운 영 기 반 조 성	40
	특색교육과정운영	교 육 과 정 운 영 내 실 화 지 원	1,020
	I C T 활용 교육지원	원 격 교 육 지 원	29,292
민 주 시 민 생 활 교 육 과	학생생활지도지원	통 일 교 육 활 성 화 지 원	5
	성폭력예방교육등	스 쿨 미 투 예 방 및 학 교 회 복 지 원	272
	학교폭력예방및교육	학 교 안 전 망 구 축	105
	대 안 교 육 운 영	학 교 밖 청 소 년 지 원	790
체 육 건 강 문 화 예 술 과	학교환경위생관리	학 교 미 세 먼 지 관 리	3
교 육 재 정 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	물 품 관 리	24,030
교육시설안전과	학교급식환경개선	급 식 시 설 개 선 (전 면)	362
	학교시설환경개선	안 전 관 리 (석 면 제 거)	33,411
	학교시설환경개선	도 장 공 사	448
	학교시설환경개선	바 닥 개 선	100
	학교시설환경개선	방 수 공 사	250
	시 설 사 업 운 영	건 축 시 설 관 리 일 반	41
미래학교추진단	시 설 사 업 운 영	그 린 스 마 트 스 쿨 운 영	3,612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운영지원	인 성 진 로 교 육 지 원	310
	I C T 활용 교육지원	원 격 수 업 지 원 플 랫 폼 구 축	4,618
학교보건진흥원	학 교 급 식 운 영	먹 거 리 생 태 전 환 교 육	292

(2) 목적지정재원 증액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회계연도중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목적지정재원은 162억 5,400만원인 바,

- **목적지정재원**으로 교부되어 **우선확정**된 2개 사업, 162억 5,400만원은 「지방재정법」²⁵⁾ 및 예산총칙²⁶⁾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내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4-3〉 세출예산중 목적지정재원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중 증액편성액 (A+B)	세출예산중 일반재원 편성액					목적지정재원 편성액 (B)
	소계 (A=a+b+c+d)	학교운영비 (a)	교육사업비 (b)	일반시설 (c)	급식시설 (d)	
254,745	238,491	82,400	121,518	34,211	362	16,254

25)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26)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p.3 <예산총칙>

제9조 ①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표 4-4〉 목적지정재원 우선확정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금 액
합 계		2	16,254
중앙정부이전수입	특별교부금	1	565
자치단체이전수입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	9,389
	기초자치단체전입금		6,29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3

- **학교안전망구축(특별교부금)**²⁷⁾(민주시민생활교육과)은 교육부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전문상담요원이 정신건강 위험학생(약 200명)의 학교를 방문하여 상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5억 6,500만원을 우선확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임
- **무상급식**²⁸⁾(체육건강문화예술과)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교육청으로 진출한 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 자치단체 부담분(1월~2월분) 156억 8,900만원을 우선확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임
- 성립전 예산의 경우, 예산서의 예산총칙 제9조②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로 명시함으로써 성립전예산의 편성시기를 ‘회계연도중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석하여 운용할 여지가 있는 바,
 - 성립전예산에 대해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로 명시한 예산총칙 제9조②는 한 회계연도중 편성되는 여러 회의 추가경정예산중 어느 하나로 성립전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예산총칙중 해당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45조로 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7)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128

28)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137

2. 세출예산 감액 관련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액편성 요청액은 **예비비 및 기타**에 편성된 **내부유보금**중 △2,664억 5,9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5〉 내부유보금 감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추 예 산 (A)	본예산 의결내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예비비및기타 (710)	322,350	20,000	568,809	588,809	△266,459
예비비 (710-01)	20,000	20,000	0	20,000	0
일 반 예 비 비	10,000	10,000	0	10,000	0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000	10,000	0	10,000	0
내부유보금 (710-03)	302,350	0	568,809	568,809	△266,459
내 부 유 보 금	302,350	0	568,809	568,809	△266,459

3. 실·국별 세출예산 검토

(1) 대변인

□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 (사업별 설명자료, p.15)

- 대변인 소관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는 기정예산(41억 4,300만원) 대비 9.7%, 4억원 증액된 45억 4,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6〉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세 부 사 업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공익캠페인및시책홍보	4,543	5,144	△1,001	4,143	400

- 사업내용중 **광고비**의 경우, '23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10억 100만원²⁹⁾이 삭감되어 '22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조정(39억 2,900만원)되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4억원을 증액하여 43억 2,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7〉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 세부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2년도
		기 정 예 산 (A)	증 감 (B)	추경예산안 (A+B)	최 종 예 산
	계	4,143	400	4,543	4,168
	광 고	3,929	400	4,329	3,929
	광고홍보민간전문가운영	11	-	11	11
	캠페인콘텐츠기획및제작	202	-	202	227

29) 광고비 49억 3,000만원을 본예산안에 편성하였으나, 39억 2,900만원 본예산 확정(△10억 100만원)

-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비교하여 세부사업 개수가 많고, 정책대상집단도 상대적으로 넓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소관 방송광고 및 신문광고인쇄 예산³⁰⁾은 '23년도 예산액(47조 1,905억원)의 0.015%, 72억 2,100만원을 편성하고 있어 사업별 설명자료의 추정사유처럼 서울시교육청의 홍보비 비율(0.032%)이 과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지 않음
- 뿐만 아니라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전체 예산 대비 홍보비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적어 홍보비 증액 필요”로 기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홍보 예산과 비교하고 있으나,³¹⁾
- '23년도 기정예산 대비 홍보비 비율은 오히려 서울시교육청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학교수, 학생수 등의 비교여건 또한 배제한 채 홍보비 편성액 절대규모만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홍보예산이 과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지 않음
- 따라서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한 홍보비 규모의 차이가 추정예산을 편성할 만큼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표 4-8〉 시·도 교육청 홍보비 등 비교 (서울·경기)

(단위 : 백만원, 교, 명)

구 분	예 산 액	학 교 수 ^{주1)}	학 생 수	홍 보 예 산	예 산 대 비
서울시교육청	12,891,521	2,157	880,370	4,143 ^{주2)}	0.032%
경기도교육청	22,334,511	4,705	1,668,558	5,744 ^{주3)}	0.026%
경 기 도 대 비	57.7%	45.8%	52.8%	72.1%	0.006%p 높음

※ 주1) 유, 초·중·고, 특수, 기타학교 포함

주2) 교육행정일반>정책기획 및 비상기획>교육정책홍보>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

주3) 교육행정일반>정책기획 및 비상기획>교육정책홍보>교육정책홍보

30)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72억 2,100만원 편성 (방송협력 40억 6,000만원, 인쇄매체광고 30억 9,600만원)

3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8, 3. 추정사유
 ○ 전체 예산 대비 홍보비 예산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적어 홍보비 증액 필요
 ○ 2023년 전체 예산 대비 홍보비 비율은 0.032%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5위
 ○ 홍보 예산 총액은 경기도교육청 5,744백만원 대비 1,631백만원 과소 편성

(2) 기획조정실

□ 교육정책개발운영 (사업별 설명자료, p.23)

○ 정책·안전기획관 소관 **교육정책개발운영**은 '23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편성요청된 10억 6,400만원 전액이 삭감된 바,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①**정책연구운영**, ②**서울교육아이디어기획단운영**, ③**서울미래교육전략토론회**를 추진하고자 4억 3,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9〉 교육정책개발운영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내 역	추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계	433	1,064	△1,064	0	433
② 서울교육아이디어 기 획 단 운 영	13	32	△32	0	13
민 간 전 문 가 및 특 별 보 좌 관 운 영	0	20	△20	0	0
① 정 책 연 구 운 영	403	927	△927	0	403
③ 서 울 미 래 교 육 전 략 토 론 회	16	49	△49	0	16
청 년 자 율 협 의 체 운 영	0	35	△35	0	0

○ 제출된 사업별 설명자료를 검토하면, **정책연구운영**은 ①연구개발비(4억원), ②정책연구과제 심의수당 등이 포함된 운영비(240만원), ③업무추진비(140만원)를 순증편성 요청한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이후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현안 발생시 정책자료 활용 및 사업자문을 위해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10〉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2023년도 제1회추경안	산	출	내	역
계	403,820				
② 운 영 비	2,420	○ 정책연구과제심의수당 (80,000원 + 30,000원) × 3회 × 4명 = 1,320천원			1,320
		○ 정책연구과제심의운영비 200,000원 × 3회 = 600천원			600
		○ 정책연구과제컨설팅 (160,000원 + 90,000원) × 2회 = 500천원			500
③ 업무추진비	1,400	○ 교육정책연구소등 유관기관 사업추진경비 20,000원 × 20명 × 2회 = 800천원			800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사업추진경비 20,000원 × 10명 × 3회 = 600천원			600
① 연구개발비	400,000	○ 정책연구개발비(본청부서) 25,000,000원 × 16개 = 400,000천원			400,000

※ 자료근거 :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24~25

○ 그러나 「지방자치법」 3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33)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 **정책연구운영**의 경우,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정책연구과제를 심의·선정하려는 것이나, 사업별 설명자료에 기재된 사업근거중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간소화·표준화·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³⁴⁾

32)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하생략)

33) 교육부예규 제75호('23. 1. 1.시행),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p.49

○ 심사수당: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예: 투자심사수당 등)

34)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4-11〉 ‘정책연구운영’중 운영비·업무추진비 예산 세부 편성 현황

세	부	내	용	산	출	내	역
· 운영비							
- 정책연구과제심의수당				(80,000원+30,000원)×3회×4명 =		1,320천원	
- 정책연구과제심의운영비				200,000원×3회 =		600천원	
- 정책연구과제컨설팅				(160,000원+90,000원)×2회 =		500천원	
· 업무추진비							
- 교육정책연구소등유관기관사업추진경비				20,000원×20명×2회 =		800천원	
- 정책연구심의위원회사업추진경비				20,000원×10명×3회 =		600천원	

- 동 규정 제50조³⁵⁾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동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의 경우에도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치법규³⁶⁾일뿐 정책연구위원회의 직접적인 설치 근거로 사료되지 않음³⁷⁾

35)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둔다.

36)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도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하 ‘항’ 생략)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항’ 생략)

제4조(공개) 교육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비공개 대상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하 ‘항’ 생략)

제6조(평가와 활용) 교육감은 각 부서와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그 결과물을 제4조에 따라 성실하게 공개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7)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7조를 통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21년 1월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음

- 서울시교육청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령이나 조례가 아닌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지침」³⁸⁾을 통해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역할, 운영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 「지방자치법」 제130조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³⁹⁾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경우, 개별 위원회의 명칭까지 열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만 지침에 근거하는 것은 조례의 운용 취지와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정책연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23년 2월말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이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 편성요청된 **정책연구운영**(4억 300만원)의 경우에도 개별 근거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법규에 근거한 위원회 설치·운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는 내부 지침에만 근거하고 있어 편성요청된 4억 300만원중 위원회 수당 및 추진경비예산은 삭감하고, 조례 제정후 필요시 소요예산이 편성요청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8)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12704, ('21.12.22)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지침”

39)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표 4-12A〉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 현황

	시·도 교육청	관 련 조 례
1	서울특별시 교육청	없음
2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15.11. 4 제정) 제5조(설치·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둔다.
3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19.10.10 제정) 제4조(설치 및 기능)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둔다.
4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17. 9.25 제정) 제5조(설치·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둔다.
5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15. 4. 3 제정) 제3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6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18. 2. 9 제정)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7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19.11. 7 제정) 제4조(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12.11.12 제정) 제5조(용역심의위원회) ①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둔다.
9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19. 6.18 제정) 제4조(설치·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둔다.

〈표 4-12B〉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 현황

	시·도 교육청	관 련 조 례
1 0	강 원 도 교 육 청	「강원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19.12.20 제정) 제4조(설치·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둔다.
1 1	충 청 북 도 교 육 청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19.11. 8제정)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둔다.
1 2	충 청 남 도 교 육 청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21.12.30 제정) 제4조(위원회의 설치·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둔다.
1 3	전 라 북 도 교 육 청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21. 2.19 제정) 제4조(설치·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4	전 라 남 도 교 육 청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19. 8. 1 제정) 제4조(위원회의 설치·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둔다.
1 5	경 상 북 도 교 육 청	없음
1 6	경 상 남 도 교 육 청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22. 4. 7 제정) 제5조(설치 및 기능) ①경상남도교육감은 용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둔다.
1 7	제주특별자치도 교 육 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09. 4.15 제정) 제4조(설치·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둔다.

□ **정책총량관리** (사업별 설명자료, p.27)

- 정책·안전기획관 소관 **정책총량관리**는 '23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2,500만원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900만원을 순증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3〉 정책총량관리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세 부 사 업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정 책 총 량 관 리	9	25	△25	0	9

- 동 사업은 '22년도의 경우, '정책사업평가단'의 구성인원이 20명이나,⁴⁰⁾ '23년도에는 직전년도 보다 2.5배, 50명으로 운영할 계획임에도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인력확대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고, 산출내역마다 산출인원을 상이하게 표기하고 있어 소요예산 산출기초를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음
- 아울러 '정책사업평가단'의 구성원은 외부인이 아닌 교원 및 행정직원 등 소속 교육청의 공무원으로 확인됨에도 '정책사업평가단'의 구성원 50명 모두에게 수당을 편성한 바,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⁴¹⁾과 「2023년도 서

40)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1157 ('22. 2. 7) “정책총량제 3.0 계획(안)” p.19

○ 정책·사업 평가단

- 구성: 교원 및 행정직원 등으로 실국별 4개 분과 운영(20명)
- 업무: 부서 정비안 검토, '서울교육 핵심과제'사업 평가

41) 교육부예규 제75호 ('23. 1. 1.시행),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p.49

○ 심사수당: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심사(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심사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 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시도교육청(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⁴²⁾은 공무원에 대한 수당 기준을 정하고 있어 학교 소속 교직원만 수당지급이 가능함에도 구성원 전부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부적절한 편성사례로 판단됨

- 따라서 ‘정책사업평가단’중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당 편성분은 적정 인원을 재산정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14〉 정책사업평가단 예산 세부 편성 현황

세	부	내	용	산	출	내	역
· 운영비							
- 정책사업평가단운영비				5,000천원×50명×2회 =		500천원	
- 정책사업평가단운영수당				(40,000원+10,000원)×50명×2회 =		5,000천원	
· 업무추진비							
- 정책사업평가단 사업추진경비				20,000원×55명×2회 =		2,200천원	

42)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844('23. 3. 3)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2차 변경 안내” p.78

라. 심사수당: 자기 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교육청(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사무까지 포함함, (단, 학교 소속 교직원이 교육청심사(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주민참여예산운영(사업별 설명자료, p.33)

- 예산담당관 소관 **주민참여예산운영**은 '22년도에 주민에게 공모하여 선정된 79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 학교현장에서 운영하여 교육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기정예산(3,000만원) 보다 13억 2,700만원 증액된 13억 5,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15〉 주민참여예산운영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세 부 사 업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주 민 참 여 예 산 운 영	1,357	1,401	△1,371	30	1,327

- '23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위원회운영' 사업비는 △13억 7,100만원 전액 삭감되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3억 2,7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별 내역을 세분화하여 ①주민참여예산위원회운영 1,300만원, ②지역회의및예산토론회운영(교육지원청) 2,400만원, ③주민참여예산사업(학교) 12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4-16〉 주민참여예산운영 세부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2 3 년 도			2022년도
	기 정 예 산 (A)	추경 증감 (B)	추경 예산 (A+B)	최 종 예 산
계	30	1,327	1,357	1,401
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운영	0	13	13	28
② 지역회의및예산토론회운영 (교육 지원 청)	0	24	24	53
③ 주민참여예산사업(학교)	0	1,290	1,290	1,290
주 민 참 여 예 산 사 업 (교육 지원 청)	30	0	30	30

- 다만, ①주민참여예산위원회운영(1,300만원)와 ②지역회의의 경우,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23년 5월부터 '24년 4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⁴³⁾ 이월이 전제된 사업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세출예산의 경우,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월액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23년도가 시작된 지 불과 두 달이 지난 3월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업임에도 당해연도를 넘어 '24년도 4월까지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한 것은 「지방재정법」⁴⁴⁾이 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려는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편성으로 오해될 수 있어 사업별 설명자료중 사업기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3)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36

2. 2023년도 추진계획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운영 : 2023. 5. ~ 2024. 4.

44)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학교기본운영비** (사업별 설명자료, p.37)

- 예산담당관 소관 **학교기본운영비**는 각급학교의 기본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학교별로 총액 배분하는 것으로 **공통경상운영비**와 **통합교부운영비**로 구성됨

〈표 4-17〉 학교기본운영비 편성 구조

공 통 경 상 운 영 비		통 합 교 부 운 영 비
학생 수, 학급 수, 건물연면적, 건물 연령의 교육비 결정 함수에 의해 산출된 계수를 적용한 공식으로 산정	+	특정 수요가 있는 운영비를 학교급 단위로 교당·급당·학생당 기준으로 산정

- 학교기본운영비는 '23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1,829억 4,900만원을 삭감하여 '22년도 본예산 수준⁴⁵⁾으로 조정하였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된 **학교기본운영비**중 **공통경상운영비** 예산만 증액요청하여 기정예산(5,727억 6,100만원) 보다 14.4%, 823억 9,900만원 증액된 6,551억 6,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⁴⁶⁾

45)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791('23. 3.10), “학교기본운영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재편성(안)”

I. 배경 및 목적

- 공공요금·물가 인상에 따른 기본 경비, 중대재해 예방 등 필요 경비 및 학교자율 환경개선 사업비(교당 평균 1억원)를 증액 반영한 2023년 학교기본운영비 본예산을 시의회 제출하였으나 전년 수준 동결(삭감)

* 본예산 제출 7,557억원 → 최종 심의의결 5,728억원 (△1,829억원)

* △1,829억원 = 기본 경비 824억원 + 학교자율 환경개선 1,005억원

* 학교자율 환경개선사업비(다정다감)는 추후 추경 편성 추진

- 「'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학교기본운영비 6,094억 5,900만원

46) '23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삭감된 학교자율환경개선비(1,005억 5,000만원)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요청하지 않음

〈표 4-18〉 학교기본운영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세 부 사 업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학 교 기 본 운 영 비	655,160	755,710	△182,949 ^{주1)}	572,761	82,399 ^{주2)}

※ 주1) ① 공통경상운영비 △823억 9,900만원

② 학교자율 환경개선 사업비 △1,005억 5,000만원

주2) ① 공통경상운영비 대상 : 공립 1,275개교 (공립 1,281개교 중 방송통신교 6개교 제외)

② 공통경상운영비 학교당 평균 : 유 1,800만원, 초 7,400만원, 중 7,400만원,
고 1억 700만원, 특수 8,700만원

- **공통경상운영비**⁴⁷⁾는 '23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삭감한 △823억 9,9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공공요금 및 물가 인상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⁴⁸⁾시행에 필요한 823억 9,900만원을 추가편성 요청한 것인 바,

〈표 4-19〉 학교기본운영비 편성 세부 내용

(단위 : 백만원, 교)

구	분	추 경 예 산 안	대 상 학 교 수	학 교 당 평 균
공공요금·물가인상에 따른 운영비 증액분	계	82,399	1,275 ^{주1)}	64
	유	5,552	296	18
	초	41,925	564	74
	중	20,673	278	74
	고	12,628	118	107
	특수	966	11	87
	각종	653	8	81

※ 주1) 1,275교에는 방송통신교 6교(중1, 고5) 미포함, 운영비는 별도 편성 (학교개별교부운영비)

47) 공통경상운영비인 공공요금·물가인상에 따른 운영비 증액분은 학교별 공통경상운영비의 20% 수준으로 편성하여 모든 공립학교급에 공통적으로 편성

4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냉·난방 에너지별 현황⁴⁹⁾을 검토하면, 냉·난방을 사용하는 11만 8,971실중 전기 81.8% (9만 7,322실), 가스 17.8% (2만 1,124실), 기타⁵⁰⁾ 0.4% (525실)인 것으로 확인되며
- 서울시 관내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육용(갑) 고압A 선택 I” 전기요금 이 '22년도 1월에는 여름철 91.6원/kWh, 겨울철 77.6원/kWh, 봄가을철 54.8원/kWh이었으나, '23년도 1월의 경우에는 여름철 115.3원/kWh, 겨울철 101.3원/kWh, 봄가을철 78.5원/kWh로 증가한 바, '23년도 1월 전기요금은 전년동기 대비 여름철 25.8%, 겨울철 30.5%, 봄·가을철 43.2%씩 각각 인상된 것으로 검토됨

〈표 4-20〉 서울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냉난방 에너지별 현황

(단위 : 실)

구 분	연 료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특 수 학 교	총 계
총	계	47,747	29,214	40,190	1,820	118,971
냉·난방	소 계	42,760	27,549	37,972	1,729	110,010
	전 기	34,882	23,333	32,653	967	91,835
	가 스	7,848	4,176	5,250	762	18,036
	기 타	30	40	69	0	139
냉 방	소 계	1,541	623	885	19	3,068
	전 기	1,529	616	885	19	3,049
	가 스	12	7	0	0	19
	기 타	0	0	0	0	0
난 방	소 계	3,446	1,042	1,333	72	5,893
	전 기	1,416	522	485	15	2,438
	가 스	1,971	511	530	57	3,069
	기 타	59	9	318	0	38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2114 ('23.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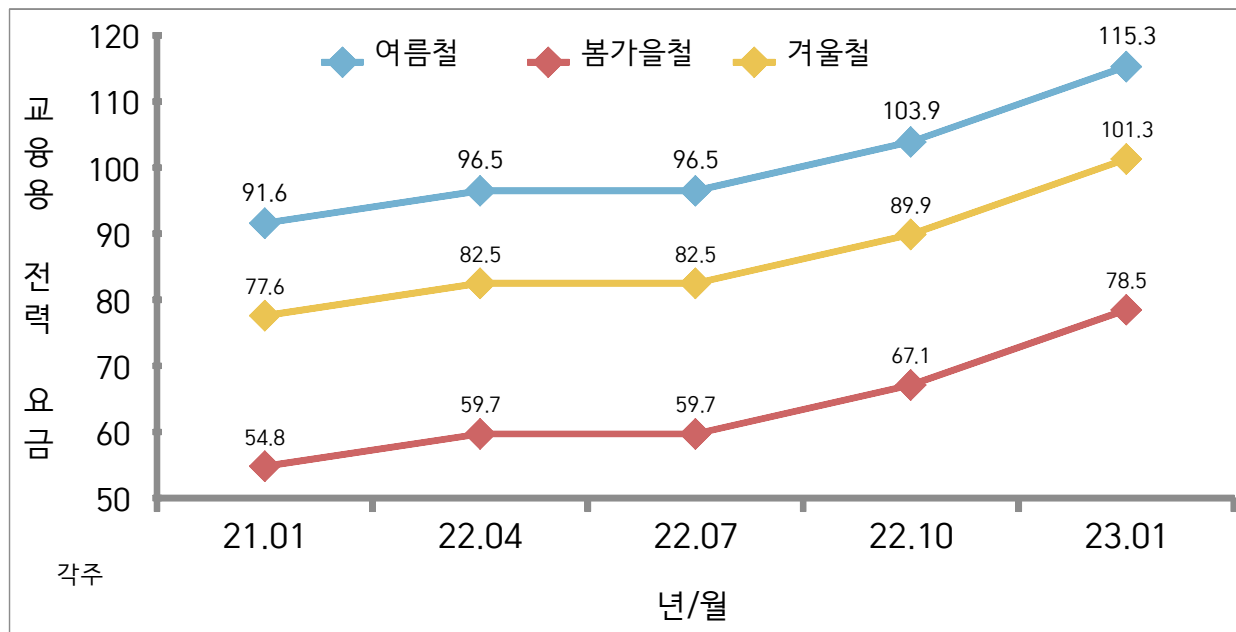
4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2114 ('23. 2.16)

○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 중 “교육용(갑) 고압A 선택1” 전력요금을 사용하는 실은 9만 835실로 전체의 94%이며 가스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 중 “냉난방공조용” 가스요금을 사용하는 실은 1만 4,192실로 전체의 67.3%임

50) 기타에너지 : 공조기(가스+전기 혼용), 등유, 심야전력, 지역난방 등

〈표 4-21〉 최근 3년간 교육용(갑) 고압A 선택 I 요금 변동내역

(단위 : 원/kWh)



※ 자료근거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 전기요금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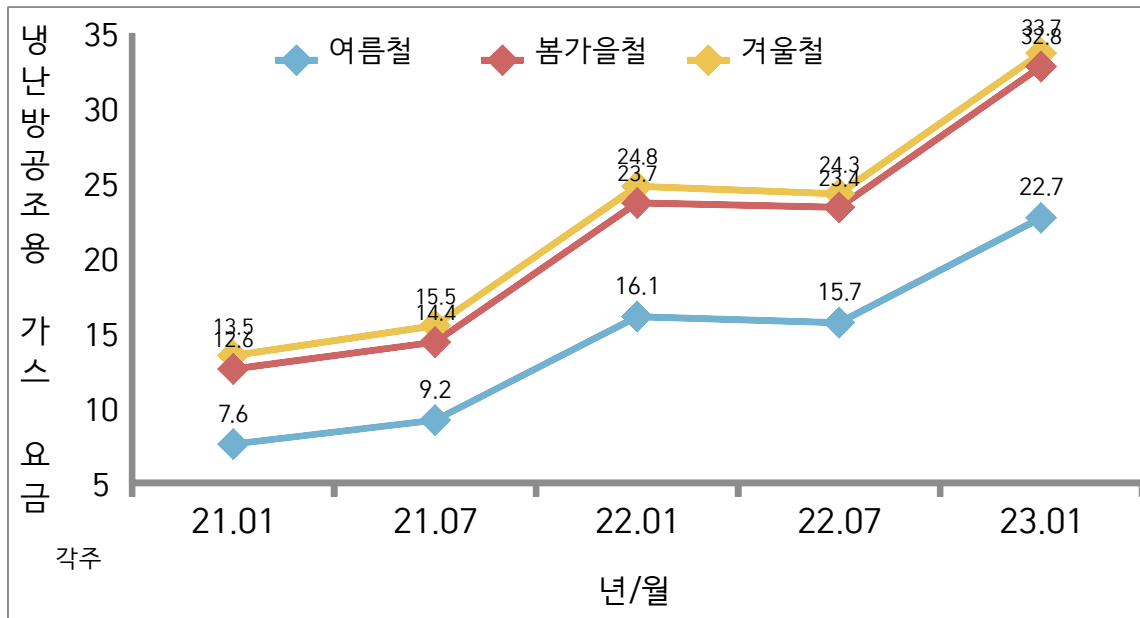
- 또한 업무·난방용 도시가스요금의 경우에도 '21년도 1월(13.5원/MJ⁵¹⁾) 부터 '23년도 1월(33.7원/MJ)까지 가스요금이 증가한 바, '23년도 1월의 경우에는 '22년도 1월(24.8원/MJ)보다 35.8% 인상된 것으로 검토되어 에너지요금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초·중·고 전기요금 납부내역의 경우, '21년도 12월보다 '22년도 12월에는 12%, 11억 2,300만원 증가한 103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23년도 1월에는 '22년도 1월보다 8%, 6억 5,300만원 증가한 92억 3,9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제출하였음⁵²⁾

51) MJ=에너지 열량단위(Megajoule) 1MJ=239Kcal

52)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316 ('23. 2.14)

〈표 4-22〉 최근 3년간 서울 냉난방공조용 도시가스 요금 변동내역

단위 : 원/MJ



※ 자료근거 : 서울도시가스 홈페이지(<https://www.seoulgas.co.kr/front/payment>) 가스요금 공시가격

- 도시가스의 경우에도 '22년도 12월에는 '21년도 12월보다 40%, 16억 9,300만원 증가한 59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23년도 1월에는 '22년도 1월보다 21%, 6억 6,700만원 증가한 38억 6,1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제출하였음

〈표 4-23〉 서울시 초중고 전기 및 가스요금 납부 자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 기 요 금				가 스 요 금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21년도 12월 ('22년도 1월 고지서 기준)	4,003	2,304	2,930	9,237	2,113	912	1,206	4,231
'22년도 12월 ('23년도 1월 고지서 기준)	4,515	2,571	3,274	10,360	2,927	1,300	1,697	5,924
증감(%)	512 (13%)	267 (12%)	344 (12%)	1,123 (12%)	814 (39%)	388 (43%)	491 (41%)	1,693 (40%)
'22년도 1월 ('22년도 2월 고지서 기준)	3,910	2,027	2,649	8,586	1,700	607	887	3,194
'23년도 1월 ('23년도 2월 예상치 작성)	4,254	2,150	2,835	9,239	2,023	726	1,112	3,861
증감(%)	344 (9%)	123 (6%)	186 (7%)	653 (8%)	323 (19%)	119 (20%)	225 (25%)	667 (21%)

※ 대상학교 :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각 회계연도 해당 월 사용분에 대한 요금(익월 고지서 기준 금액)

- 따라서 **공통경상운영비**의 경우, 교육용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납부액 증가 추이와 소비자물가지수⁵³⁾도 전년대비 5.1%p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에 대한 증액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3)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is.kr/statHtml/>)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발표자료

□ 내부유보금 (사업별 설명자료, p.40)

- 내부유보금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경비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기정예산(5,688억 900만원)의 △46.8%, △2,664억 5,900만원을 감액한 3,023억 5,00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표 4-24〉 내부유보금 감액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세 부 사 업	기 정 예 산 (A)	추 경 예 산 안 (B)	추 가 경 정 예 산 증 감 내 역	
			증 감 액 (C=B-A)	증 감 륜 (C/A)
내 부 유 보 금	568,809	302,350	△266,459	△46.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2580 ('23. 3.22)

- 내부유보금은 '23년도 본예산안(12조 8,915억 2,100만원)중 삭감된 △5,688억 900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한 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부유보금중 △2,664억 5,900만원을 감액하여 세입감액분을 보전(279억 6,800만원)하고, 33개 세세부사업⁵⁴⁾에 2,384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표 4-25〉 세출예산중 내부유보금으로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내 부 유 보 금 (A+B)	일 반 재 원				편 성 액	보 통 교 부 금 감 액 보 전 (B)
	소 계 (A=a+b+c+d)	학교운영비 (a)	교육사업비 (b)	일반시설 (c)	급식시설 (d)	
266,459	238,491	82,400	121,518	34,211	362	27,96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4

54) 「내부유보금」을 제외한 36개 세출 세세부사업중 목적지정재원인 「학교안전망구축(특별교부금)」, 「무상급식」과 증감예산액이 0원인 「학교청소관리」를 제외한 33개 세세부사업

□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사업별 설명자료, p.45)

○ 참여협력담당관 소관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은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을 포함한 3개 사업내용에 대해 114억 8,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①**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의 경우, 지난 '15년도부터 '22년도까지 교육청·서울시·자치구가 재원을 부담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종료하고, 교육청과 자치구가 재원을 부담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사업에 105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이며 ②**교육후견인제운영**과 ③**청소년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운영**의 경우에도 각각 소요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6〉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소요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계	11,489	16,455	△16,455	0	11,489
② 교육후견인제운영	406	0	0	0	406
③ 청소년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운영	542	1,564	△1,564	0	542
①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10,540	14,817	△14,817	0	10,540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협의체운영	0	73	△73	0	0

○ ①**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의 경우, 교육부가 교육부·교육청·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고보조사업인 **미래교육지구**⁵⁵⁾를 추진함에 따라 교육청·자치구가 참여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자체재원으로 신규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 서울형혁신교육지구와 “상호 다른 사업”으로 회신한 바,⁵⁶⁾

55) 교육부, 학교정책과-5664 ('22.10.14), “2023 미래교육지구 사업공모계획”

56)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1641 ('23. 2.14)

- 기존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였으나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과 상호 다른 신규사업으로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년 3월말 현재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조례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더욱이 자치구의 경우에도 기존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과 “상호 다른 사업”이기에 기존의 조례에 근거하여 자치구의 참여와 재원부담은 불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내용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와는 별도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자치법규상의 근거가 없어 소요예산 편성은 불가한 사안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4억 600만원을 순증요청한 ②**교육후견인제**의 경우, 소요예산 중 민간이전 4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보조금은 교육부의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명시되어야 편성가능한 바,
- 사업부서가 기존 **서울형혁신교육지구**와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은 “상호 다른 사업”으로 회신함에 따라 동 사업내용의 경우에도 민간이전 재원을 편성할 조례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부서는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은 기존 사업과 “상호 다른 사업”으로 회신하고 있으나
- 실제로는 '23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과 동일한 사업계획과 수요조사⁵⁷⁾에 근거하고 있고, 교육청과 자치구간 새로운 지역사회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조차 없으며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에 대한 별도의 사업계획 또한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57)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15517 ('22.12.13) 「자치구별 특성이 살아 숨쉬는 미래교육 추진을 위한 '23~'24 서울미래교육지구 지정 계획(안)」

- 기존 사업에 대해 사업명을 수정하고, 사업내용중 일부를 가감한 이른바 ‘라벨같이’ 형태로 사료되어 ①별도의 조례 제정, ②관련 계획수립, ③자치구간 협의완료 등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이후 소요예산에 대한 편성요청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표 4-2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서울미래교육지구 비교

구 분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특 이 사 항
추진시기	2015~2022	2023~	
소요예산	16,455,342,000원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역량강화 -서울형혁신교육지구협의체운영	11,858,200,000원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교육후견인제운영 -다가치학교운영	추경 예산은 교육청, 11개 교육지원청의 운영비, 업무추진비 전액 미반영, 학교선택제사업, 장기계속계약('22~'23) 관련 예산만 편성
예산편성주체	교육청-서울시-자치구 1:1:1(5억:5억:5억) ※ 2022년 서울시 4억	교육청-자치구	2023 대응 예산은 교육청 5억 기준 자치구 자율 편성
사업근거(조례)	1.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2021.5.20., 일부개정) 2. 「서울특별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2017.1.5.제정)	1. 제3기 서울시교육감 출범위원회 백서:3-3-4 혁신교육지구 질적 도약 2. (교육부)2023 미래교육지구 사업공모계획 (교육부학교정책과-5664,22.10.14)	<u>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 계획 수립 예정(3월)</u> ※ 2023서울시의'약자와의 동행 사업' 예산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함
사업근거(방침)	2022서울형혁신교육지구 기본계획 (참여협력담당관-1682,2022.2.10)	2023서울미래교육지구 지정계획 (참여협력담당관-16484,22.12.28)	<u>서울미래교육지구 기본계획 수립 예정(3월)</u>

※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1641 ('23. 2.14)

□ **학교협동조합활성화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p.50)

○ 참여협력담당관 소관 **학교협동조합활성화지원**은 1억 5,6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23년도 본예산안에 1억 8,400만원을 편성요청하였으나 △1억 6,700만원이 감액된 바 있음

- 학교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⁵⁸⁾로 '23년 2월 현재 서울시교육청내에 26개의 협동조합이 운영중이나, 학교협동조합의 특성상 학생·교직원·학부모 등의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위탁을 통해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임

〈표 4-28〉 학교협동조합활성화지원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사 회 적 경 제 학 교 협 동 조 합 지 원 센 터 운 영	174	184	△167	17	156

〈표 4-29〉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내 역	추 소 요 예 산	산 출 내 역
사 회 적 경 제 학 교 협 동 조 합 지 원 센 터 운 영	156,500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위탁운영비 126,500천원×1개소 · 학교협동조합 신규시설지원 10,000천원×3개교

-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요청된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운영**은 ①민간위탁 운영 계약에 따른 2년차('23. 3~'23.12, 9개월분) 위탁운영비 1억 2,650만원 과 ②공립 2개교, 사립 1개교에 학교협동조합을 신설하고자 학교회계전출

58)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를 포함

금 3,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지난 '22년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 행정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위탁운영비 편성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추경재원의 한정성에도 불구하고, 공·사립 3개교에 학교협동조합 신규 시설을 조성(3,000만원)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요청할 만큼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공무원 및 교원노사관리

- 공무원노사관리 (사업별 설명자료, p.55)
- 교원노사관리 (사업별 설명자료, p.58)

○ **공무원노사관리**는 공무원단체 사무소 임차료 등을 제공하고자 **공무원단체 지원** 1억 3,500만원을 포함한 1억 6,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내용의 경우, '23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3억 7,000만원(공무원단체지원 △2억 9,000만원, 노사관계연수 △8,0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음

〈표 4-30〉 공무원노사관리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소 계	169	404	△370	34	135
공 무 원 단 체 지 원	135	290	△290	0	135
공무원단체관련협의회	6	6	0	6	0
공 무 원 단 체 일 반 운 영	27	27	0	27	0
노 사 관 계 연 수	0	80	△80	0	0

○ **교원노사관리**의 경우에도 교원단체 사무소 임차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직단체지원** 1억 6,400만원⁵⁹⁾을 포함한 3억 2,1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59) '23년도 본예산 심사시 4억 7,800만원 편성하였으나, △3억 2,000만원(교원단체지원 △2억 6,400만원, 노사관계연수 △3,600만원, 서울교육노사발전협의회 운영 △2,000만원) 감액 조정되었음

〈표 4-31〉 교원노사관리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계	321	478	△320	157	164
교원노조단체교섭 및 협약추진	22	22	0	22	0
교 직 단 체 지 원	296	396	△264	132	164
노 사 관 계 연 수	0	36	△36	0	0
서울교육노사발전협의회 운영	0	20	△20	0	0
서울교총과의교섭협의	3	3	0	3	0

○ 동 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⁶⁰⁾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 동법은 부당노동행위를 금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의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에는⁶¹⁾ 최소한의 규모로 노동조합 사무소를 사용자가 제공하

6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3. 생략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 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61) 고용노동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21. 9), p.206, p.344

■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노동조합 행사 현물 지원 등

○ 공무원노조법 제17조제2항과 노조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은 허용됨

○ 따라서, 귀 기관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여부는 사용자의 경비지원에 의한 노조활동 자주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노사간 합의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 규모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노조행사에 현물지원 여부는,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 또는 재산을 지원하는 관계 법령 및 사무처리 기준을 준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공무원노사관계과-2203, 2018. 9. 12)

■ 사·도교육감이 교원노조 사무실을 무상제공하는 것이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것은 동 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한 것으로서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할 것인지,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느 곳에 어떤 형태로 제공하는 것까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예산 또는 재산을 지원하는 관계 법령 및 사무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음

- 아울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⁶²⁾에는 교직원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사무소 제공 등에 대한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무소 임차료 지원 등에 대한 조례상 지원근거가 구체화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사용자가 사무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노조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규모에 그쳐야 하며 복수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특정노조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사무소 임차 비용, 면적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없이 1개 사무소당 15억원에서 2,000만원까지 보증금을 차등제공 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소지도 제기될 수 있어 향후 노동조합 사무소 임차료 지원 등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다만,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 단서조항은 노사합의 등을 통해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사용자가 제공하는 것은 동 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할 것인지, 제공하는 경우에 어느 장소에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공여부 및 구체적인 제공 형태·방법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 기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임 (’00. 3. 3)

6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사업의 범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교직원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의 인성함양과 창의적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
2.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뿐만 아니라 현재 교원·공무원노조가 사용하는 사무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 주체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⁶³⁾

- 행정안전부의 「2022 공유재산 업무편람」⁶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간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권 설정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교원·공무원노조가 사용하는 6개 사무소중 한 곳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어 「공유재산 업무편람」이 정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이 관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임차한 민간건물은 사실상 서울시교육청의 공유재산에 해당되어 교원 및 공무원 노조에 이를 무상 제공할 경우에는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나 사용료(대부료) 감면⁶⁵⁾ 등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경우에도 무상사용과 무상대부 등에

63) 서울특별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1290 ('23. 2. 9)

64) 행정안전부, 「2022 공유재산 업무편람」, ('22. 6), p.259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권 설정을 의무화하여야 하며, 그 전세금에 대해 우선변제 받을 권리·노력을 하여야 함

65)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대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⁶⁶⁾ 하고 있어 관련 절차가 준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⁶⁷⁾은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은 취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근저당권(사권)⁶⁸⁾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계약하여 서울교사노동조합의 사무실로 제공하고 있어 동 부동산 계약에 대한 별도의 소명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66)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2.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영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 <개정 2019.1.3.>
 6.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7.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일반재산의 신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9.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6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8)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3116 ('22. 5.10)

- 서울교사노동조합 사무실 관련 채권 설정 현황

(단위 : 백만원)

순위	설정인	종류	설정범위	설정금액
1	주식회사○○은행	근저당권	건물+토지	299
2	○○○○오일주식회사	근저당권	건물+토지	360
3	서울특별시교육청	근저당권	건물+토지	520
4	주식회사○○은행	근저당권	건물+토지	5,880
5	○○○○오일주식회사	근저당권	건물+토지	240
6	정○○	전세권	건물	300
합 계				7,599

〈표 4-32〉 공무원·교원단체 사무소 제공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면적(㎡)	보증금 및 월세	임 차 계 약 기 간	임 대 차 계 약 주 체	비 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117.29	◦보증금 20,000 ◦월세 2,200	'21. 8. 1 ~ '23. 7.31	서울특별시 교육감	근저당
서울특별시 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동조합	109.95	◦보증금 30,000 ◦월세 2,200	'22. 4. 1 ~ '24. 3.31	〃	전세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	486	◦보증금 1,500,000 ◦월세 1,573	'21. 7.31 ~ '23. 7.30	서울특별시 교육감	근저당
서울교사 노동조합	331.2	◦보증금 400,000 ◦월세 1,936	'22. 8. 1 ~ '24. 7.31	〃	근저당
한국교원 노동조합 서울본부	178.36	◦전세 600,000	'19. 5. 1 ~ '24. 4.30	〃	근저당
대한민국 교원노동 조합 서울지부	247.82	◦보증금 200,000 ◦월세 1,320	'22. 8. 1 ~ '24. 7.31	〃	근저당

(3) 교육정책국

□ 생태전환교육내실화 (사업별 설명자료, p.65)

- 교육혁신과 소관 **생태전환교육내실화**는 '23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소관 교육위원회가 △5억 900만원을 삭감한 3개 사업내용에 대해 ①**생태전환교육역량강화** 7,100만원, ②**생태전환교육운영지원** 2억 300만원, ③**생태전환실천문화확산** 9억 6,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4,2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33〉 생태전환교육내실화 소요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안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계	1,751	1,017	△509	508	1,242
① 생태전환교육역량강화	324	426	△173	253	71
② 생태전환교육운영지원	347	423	△279	144	203
③ 생태전환실천문화확산	1,078	167	△57	110	968

- ③**생태전환실천문화확산**, 이른바 ‘농촌유학사업’은 전라남·북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 소재 공립초 1~6학년, 중학교 1~2학년중 농촌유학 참여자에게 초기정착금과 유학비를 지원하고자⁶⁹⁾ 자치단체등이전 9억 6,8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 1억원, '22학년도 2학기 농촌유학 참가자의 농촌유학비 8,800만원, '23년도 농촌유학 사업비 7억 8,000만원을 편성요청 한 것임

- 교육부의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의 ‘목’ 설정분류에 따르면 “자치단체등이전”은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경비로 조례상 근거가 있어야 타 시·도 교육청으로 재원이전이 가능한 바,

69) ①초기정착금 50만원(최초 1회), ②유학비 30만원(매월), 취약계층 50만원(매월)

-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②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사업근거로 명시하고 있고,

- 사업부서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⁷⁰⁾ 중 “교육감은 도농교육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근거로 농촌유학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등이전 8억 6,8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는 '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소요예산처럼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지출하는 운영비, 업무추진비, 학교회계전출금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근거로 사료되는 바,

-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두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20조⁷¹⁾와 동법 시행령 제32조⁷²⁾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경비를 지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특히, 「지방재정법」 제17조⁷³⁾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

70)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도농교육교류협력의 내실화)

② 교육감은 도농교육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71) 「지방재정법」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7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73)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 생략)

적 조건을 제외하고, 예산의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요청된 자치단체등이전(8억 6,800만원)은 관련 조례에 타 시·도교육청으로 재원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구체화 되어야 시·도교육청간 재원이전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됨

- 실제로 지난 '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시 관련 조례중 타 시·도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부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지적되어⁷⁴⁾ 지난 '22년 4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⁷⁵⁾ 제11조②항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한 사례가 있음
- 더욱이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교육청)로 전출하는 사업비를 (중략) 예산 및 기금에 편성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근거함이 바람직”하다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회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⁷⁶⁾

○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중 제6조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으로서 동 사업내용과 같이 전라남·북도교육청으로 재원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구체화 되어야만 다른 시·도교육청으로 재원이전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됨

74)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1.12.31)

75) ① 의안번호 : 3128

② 안건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 안건제출 : 2022. 3.10

④ 본회의 의결 : 2022. 4. 8 (가결)

76)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702 ('22. 2. 7),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 회신”

○ 뿐만 아니라 사업근거로 제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동 조례 제11조는 “기금을 재원으로 집행되는 사업”만 다른 시·도교육청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금을 통한 지출이 아닌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상태로는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지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편성이 불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생태전환실천문화 확산, 이른바 ‘농촌유학사업’은 ’23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교육위원회가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액 삭감의결 하였으나,

- 사업부서는 지난해 12월 8일, 농촌유학생 공고 게시를 한 이후 금년 1월 11일까지 추가모집을 하는 등 다른 시·도교육청으로 이전가능한 재원이 없는 상태임에도 사업의 계속성을 홍보한 바,
- 이는 민간시장의 ‘허위매물’ 사례로 와전될 수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공식적인 해명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단체이전 8억 6,8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사후적인 치유라 할 것이나 관련 사안에 대한 별도 소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학교혁신기획운영** (사업별 설명자료, p.73)

- 교육혁신과 소관 **학교혁신기획운영**중 **학교자율운영체제지원**은 62억 8,300만원을 순증편성 요청한 것으로 '23년도 본예산안에 8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바 있음

〈표 4-34〉 학교자율운영체제지원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계	8,149	10,631	△8,764	1,866	6,283
학교자율운영체제지원	6,283	8,764	△8,764	0	6,283
학교안교원학습공동체운영	332	332	0	332	0
학교통합지원센터운영	653	653	0	653	0
학교혁신일반화지원	865	865	0	865	0
학교혁신지원센터운영	15	15	0	15	0

〈표 4-35〉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소 요 예 산	산 출 내 역
학교자율운영체제지원	6,283	○ (국립)(6×2개교) + (4×2개교) + (3×6개교) ○ (공립)(6×566개교) + (4×278개교) + (3×137개교) ○ (사립)(6×38개교) + (4×111개교) + (3×218개교)

- **학교자율운영체제지원**은 교육청이 목적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사업에 대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 초등영어 희망교실, 장애성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프로그램, 학습자가 운영하는 평생교실, 세계시민교육 실천동아리 등 21개 선택영역⁷⁷⁾중 학교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전출금 등 62억 8,300만원을 편성하여 초·중·고·특수학교 및 공립 각종학교 1,358개교에 예산을 전출하여 운영되는 사업임

7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671 ('23. 1.13) 「2023 학교자율 사업운영제 기본계획」

○ 학교 자율 사업운영 영역

[제1영역] 교육과정자율운영영역 : 교육 분야 11개 영역(교육과정·수업 평가, 자유학년제, 문화예술, 과학환경정보, 인권·민주시민 등)

[제2영역] 공동체영역 학교안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학생자치영역 운영, 학교 학부모회 운영 지원

[제3영역] 선택영역 : 21개 영역 (초등영어 희망교실, 장애성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프로그램, 학습자가 운영하는 평생교실,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세계시민교육 실천동아리 등)

□ **공영형사립유치원운영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p.81)

- 유아교육과 소관 **공영형사립유치원운영지원**은 '23년도 본예산 심사시 소관 교육위원회가 편성액 전액(△20억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사업명⁷⁸⁾을 수정하여 18억 5,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36〉 공영형사립유치원운영지원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공영형사립유치원운영지원	1,855	2,006	△2,006	0	1,855

- 동 사업은 **공영형사립유치원**에 운영비, 인건비 등 재정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23년 현재, 4개의 공영형사립유치원을 운영중인 바,⁷⁹⁾
- 편성요청된 예산중 18억 5,000만원은 공영형 사립유치원 4개원에 대한 인건비(11억 2,000만원)와 운영비(7억 3,000만원)를 편성요청한 것임

78) 본예산안의 경우,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운영지원**으로 제출하였으나, 추경안에는 **공영형사립유치원지원**으로 제출함

79) 서울시교육청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 현황

('22.12.31.기준)

구 분		2017학년도 선정·운영		2018학년도 선정·운영	
		한양제일유치원	대유유치원	명신유치원	영천유치원
소재지		서대문구	강서구	영등포구	성북구
모집학급/정원/현원		3학급/62명/62명	4학급/86명/68명	5학급/112명/108명	3학급/62명/50명
약정 기간	최초(5년)	2017.3.~2022.2.	2017.3.~2022.2.	2018.3.~2023.2.	2018.3.~2023.2.
	재약정(3년)	2022.3.~2025.2.	2022.3.~2025.2.	2023.3.~2026.2.	2023.3.~2026.2.

□ **초등교장자격연수** (사업별 설명자료, p.87)

- 초등교육과 소관 **초등교장 자격연수**는 공·사립 초등 교감을 대상으로 초등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를 운영하고자 8억 8,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37〉 초등교장자격연수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공 사 립 (특 수) 초 등 교 장 자 격 연 수	887	1,136	△440	695	192

- 동 사업의 경우, '23년도 본예산 심사시 소관 교육위원회가 교육대상자 수와 연수운영비(140명, 1인 790만원, 위탁연수운영)를 '22년도 수준(130명, 1인 530만원, 코로나로 인한 자체 및 원격연수)으로 감조정한 바,
- 서울시교육청은 연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3년도 교육과정을 위탁연수에서 자체연수로 사업을 추진중이나,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연수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22년도 대비 1인당 148만원 증가한 680만원으로 소요 예산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됨⁸⁰⁾
- 초등교장자격연수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자격기준⁸¹⁾과 교육부가 고시

80)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p.88

○ 타 시·도교육청 1인당 연수비 6,600천원

○ 국가정책연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비 100천원, 한국교원대종합교육연수원 본연수비 6,500천원

81) 「초·중등교육법」 [별표 1] 교장·교감 자격기준 중 초등학교 교장

1. 초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3.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

4.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한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등에 따른 표준교육과정⁸²⁾으로 운영되는 점 등도 고려하여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82) 초등교장 연수과정 : 교(원)장 자격연수를 국가정책연수·시도정책연수·본연수 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연수과정별 중점사항을 반영하여 운영

구분	시간(일)	운영기관	주요내용
계	204시간 이상		
국가정책연수	12시간 (2일)	중앙교육연수원	○ 국가교육정책이해와 학교경영혁신 ○ 미래지향적가치관 및 책무성 함양
시·도정책연수	12시간 (2일)	교육청 지정기관	○ 시도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 ※ 국가교육정책과 관련된 시도교육청정책 포함
본연수	180시간 이상 (25일 이상)	교육청 지정기관	○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기준

□ **창의공감교육과정운영** (사업별 설명자료, p.90)

○ 초등교육과 소관 **창의공감교육과정운영**은 '23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소관 교육위원회가 소요예산 전액(△87억 5,6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①우리가꿈꾸는교실학급운영지원을 위한 학교회계전출금 82억원과 ②우리가꿈꾸는교실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6,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①우리가꿈꾸는교실학급운영지원으로 편성요청된 학교회계전출금 82억원은 공립초 3~6학년 8,200학급에 학급 단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2년도(7,500학급)보다 대상학급(8,200학급)을 확대하여 편성요청한 것임

〈표 4-38〉 창의공감교육과정운영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계	8,267	8,756	△8,756	0	8,267
① 우리가꿈꾸는교실학급운영지원	8,200	8,200	△8,200	0	8,200
② 우 리 가 꿈 꾸 는 교 실 운 영	67	244	△244	0	67
초등배움나눔수업성장프로젝트등	0	312	△312	0	0

□ **초등돌봄교실운영** (사업별 설명자료, p.94)

- 초등교육과 소관 **초등돌봄교실운영**은 '23년 4월부터 '24년 2월까지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45,500명)에게 간식(2,500원)을 제공하고자 학교회계전출금 250억 2,5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임

〈표 4-39〉 초등돌봄교실운영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계	51,070	26,045	0	26,045	25,025
초 등 돌 봄 교 실 운 영	50,956	25,931	0	25,931	25,025
초 등 돌 봄 교 실 담 당 자 연 수	114	114	0	114	0

- 제출된 사업별 설명자료의 산출내역을 검토하면, ①방과후부터 17시까지 무상 간식 43,250명분과 ②17시 이후 무상 간식 2,250명분으로 구분하여 편성한 것으로

- ①43,250명분 237억 8,700만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자체재원으로 추진계획한 것이고, ②2,250명분 12억 3,700만원은 국가시책 사업인 저녁돌봄 사업을 위해 향후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면 대응편성이 필요한 서울시교육청 부담분을 미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⁸³⁾

83) ①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84 ('23. 1.11), “2023년 제2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저녁돌봄) 수요 조사”

②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905 ('23. 1.17), “(서울)2023년 제2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저녁돌봄) 소요액 신청”

〈표 4-40〉 돌봄교실 간식비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산	출	내	역
25,025		① 방과후~17시까지 무상 간식 ↓ ①[(2,500원×20일×11월)×43,250명^{주1)}]+②[(2,500원×20일×11월)×2,250명^{주2)}	② 17시 이후 무상 간식 ↓	

※ 주1) 연간평균학생수 : {(46,000명×9개월)+(35,000명×3개월)}÷12월=43,250명

• 학기중 46,000명, 방학중 35,000명 ('22년도 기준)

주2) 오후(저녁)돌봄교실 추가지원 대상 학생수 : 2,250명

• 17~19시 참여, 총 3,000명 중 교육부 750명 지원

※ 교육부 지원 750명 : '22년도 저녁돌봄 신청자 1,500명 기준 50%로 산정된 것임

○ 제출된 사업별 설명자료는 초등돌봄교실운영 기간을 '23년 4월부터 '24년 2월까지 11개월로 명시하여 편성 시점부터 예산의 이월이 전제된 편성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과년도 편성분은 삭감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한정하여 소요예산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은 그동안 수익자부담으로 추진하던 돌봄교실 간식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⁸⁴⁾과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에 근거한 것이나,

-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방과후 활동에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로 명시되어 있을 뿐, 돌봄교실 간식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령으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84)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 지역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의 경우에도⁸⁵⁾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기본계획 수립부터 평가까지 교육복지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는 조례라는 점에서 간식비 무상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조례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 더욱이 '23년 1월 수립된 교육부의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안)」⁸⁶⁾에는 법령 제정 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통해 한시적으로 방과후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23년도 하반기까지 가칭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도 교육청도 「늘봄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표 4-41〉 돌봄교실 간식비 무상지원 사업구조

부 담 방 식	수익자부담 ➡ 무상	
지 원 대 상	○ 돌봄이용 모든 학생 ○ 방과후~17시 ○ 43,250명 ('23년 기준)	○ 저녁돌봄 이용 학생 ○ 17시 이후 ○ 3,000명
재 원 부 담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750명 ⁸⁷⁾ 서울시교육청 2,250명
소 요 예 산	237억 8,700만원	12억 3,700만원

8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란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 소외·부적응,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여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가.~마. (생략)
 - 바. 학교의 돌봄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86) 교육부,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안)」, ('23. 1)

87) 교육부, 「23년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방과후·초등돌봄 지원강화 사업계획(수정)」, ('23. 3)

-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돌봄교실 간식비 무상지원을 사회보장 사업으로 인식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⁸⁸⁾를 이행한 바,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⁸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돌봄교실 간식비 무상지원’이 기존 교육복지에 대한 신설·변경에 해당되어 사업부서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돌봄교실 간식비 무상지원’은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에 명시된 ‘교육복지사업’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사업내용으로 사료되나,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가 필요하여 이를 이행한 사업내용이므로 간식비 무상지원을 위한 조례상의 근거가 별도로 제·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현재까지 관련 조례 제·개정안이 제출된 사실이 없어 ‘돌봄교실 간식비 무상지원’에 대한 근거는 불비된 상태로 사료됨

88) ■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14085 ('22.10. 6)

“서울시교육청 초등돌봄교실 무상 간식 지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 보건복지부-4264 ('22.11. 8)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설 사업에 대한 협의 결과 송부”

8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원격교육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p.99)

○ 중등교육과 소관 **원격교육지원**은 ①학생 스마트기기 「디벗(Digital+벗)」 보급을 포함하여 3개 사업내용에 292억 9,200만원을 증액요청한 것으로, '23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92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①**디지털환경조성**(학생 스마트기기 「디벗」 보급 외) △923억 8,9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음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디벗」 지원대상 및 사업기간을 조정하여 289억 7,000만원을 증액요청한 것임⁹⁰⁾

〈표 4-42〉 원격교육지원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계	29,570	92,667	△92,389	277	29,292
① 디 지 털 환 경 조 성 (「 디 벗 」 보 급 외)	28,970	92,389	△92,389	0	28,970
② 디 지 털 기 반 학 생 맞 춤 형 교 수 학 습 지 원 (교 원 디 지 털 연 수 외)	322	0	0	0	322
③ 원 격 교 육 네 트 워 크 구 축 · 운 영	277	277	0	277	0

○ 학생 스마트기기 「디벗」 보급 사업은 '23년도 본예산 심사시 편성요청액 (923억 8,900만원) 전액이 삭감된 바, 추진 희망교를 조사하여 전년도 이월금(353억 8,200만원)을 중학교 1학년 70%를 대상으로 1차 사업 추진하고⁹¹⁾, 금회 추가경정예산 확보 후 중학교 1학년 30%(부족분)를 대상으로 2차 추진할 예정임⁹²⁾

90) ① 본예산안 사업기간 : '23. 1~12 ➡ 제1회 추경안 사업기간 : '23. 5~12

② 본예산안 사업대상 : 중·고1학년, 고등학교 교원 전체

➡ 제1회 추경안 사업대상 : 중1학년 부족분 (단, 스마트기기 충전함 지원은 중1 전체 학급)

91)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4344('23. 2. 6), “2023년도 중1 디벗 우선추진교 선정에 따른 스마트기기 보급 요청”

92)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243('23. 1. 2), “2023년도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디벗 사업 추진 협조 요청”

- 다만, 구매 예정수량은 스마트기기 보급을 1, 2차로 분할 추진하여 감소되었으나, 구매 단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점인 '21년도 61만원 보다 27.9% 인상되었고, '23년도 본예산안 기준단가 71만원 보다 9.9% 인상된 78만원으로 확인되는 바,⁹³⁾
- 본예산안 심사시 우리 위원회가 스마트기기 보급이 서울시교육청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듯이 스마트기기 사양변화 등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재정부담은 주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사료됨

〈표 4-43〉 각 년도별 「디벗」 편성 현황 ('23~'21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 상 학 년	예 산 액 ^{주 1)}	비 고
계			117,464	
2023	본 예산	2023학년도 중·고1학년 고등학교 교원 전체	0	· 구매방식 · 기준단가 71만원 · 예산안 전액 삭감 (△83,034)
	제 1 회 추 경 안	2023학년도 중1학년(부족분)	24,314	· 구매방식(충전함 포함) · 기준단가 78만원
2022	본 예산	2023학년도 중1학년	51,734	· 구매방식 · 기준단가 70만원
	제 2 회 추 경	2023학년도 중·고1학년 고등학교 교원 전체	△20,714	· 구매방식→임차방식 (학교회계전출금 → 운영비로 편성목 변경) · 기준단가 16만원(렌탈) · 임차방식→구매방식 - '22.10월, 운영비 → 유형자산으로 전용 - '22. 12월, 명시이월
2021	제 1 회 추 경	2022학년도 중1학년 중학교 교원 전체	60,019	· 구매방식
	제 2 회 추 경	혁신고(14개교) 1학년 학생 및 교원 전체	2,111	· 기준단가 61만원

※ 주1) 예산액 : 「원격교육지원」 사업 중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만 표시 (부대비용 제외)

93) 스마트기기보급 예산 산출내역 ('23년도 본예산안 대비)

①수량 : 165,000대 → 25,140대, ②단가 : 717,680원 → 784,750원

○ 더욱이 지난 '22년 8월, 교육부는 서울 등에서 배포중인 태블릿PC나 현재 학교에서 보유 중인 컴퓨터가 AI교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현장의견이 있고, 교육부가 디지털기반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①'23년도 학교급별 지원방안 마련, ②'24년도 시범운영, ③'25년도 단계적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⁹⁴⁾

- 지난 2월말, 교육부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통해 '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1, 고1(공통·일반선택), '26년에는 초 5~6학년과 중2, '27년도 중3 등 단계적으로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계획이고, 금년 8월까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으로 발표한 바,⁹⁵⁾

-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25년도 이후에는 1인 1스마트기기 구축이 필요할 것이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중·고생만을 대상으로 보급계획한 것이고, 교육부는 초 3·4, 중1, 고1부터 시작할 계획에 있어 스마트기기 보급 대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디벗을 포함한 스마트기기 구축은 대규모 교육재정이 지속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하려는 스마트기기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사양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디벗」 보급에 수반되는 디지털 튜터 지원은 법령 및 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⁹⁶⁾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94) 교육부, 미래교육추진담당관-2704 ('22. 8.31),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 수립 알림”

95)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578 ('23. 2.24),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수립 알림”

96)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4297 ('22. 8.24)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별표4]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제5조제2항 관련)”

330 자치단체등이전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교육청에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보조 ○ 교육청에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민간에 교부하는 보조금 중 자본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 ○ 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주1)}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 받은 자치단체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보조(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경비)

※ 주1) ②교육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 동 사업의 추진 근거로 제시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97)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98)의 경우에는 예산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보조금을 편성·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법령으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동 편성 사례의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간 협약⁹⁹⁾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이행한 사안이라 하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자치법규상의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지방재정법」 제17조¹⁰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¹⁰¹⁾ 준수 여부 등 예산편성의 적법한 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중략)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하 생략)

97)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7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3. (생략)

4. 원활한 원격교육을 위한 지원인력의 배치 (이하생략)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또는 교구·장비 및 시설의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98)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원격수업과 관련한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99)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4220 ('22. 4. 1), 「2022 서울 미래교육 협약」

100)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3. (생략)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 생략)

10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시·도비 기준보조율)

- ①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하 생략)

□ **교육실습운영기반조성** (사업별 설명자료, p.106)

- 중등교육과 소관 **교육실습운영기반조성**은 지난 '21년 12월, 교육부의 초·중 등 교원양성체제 발전안에 따른 실습학기제¹⁰²⁾를 내실화하고, 현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 '23년도 본예산 심사시 △4,800만원(실습학기자문단운영) 전액이 삭감되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사업명을 수정(실습학기운영기반조성)하여 4,000만원을 순증편성 요청한 것임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 요청한 사업내용은 '23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나, 소요예산중 행사용품, 회의운영수당 등 사실상 '23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삭감된 실습학기자문단운영(△4,800만원)중 일부 예산과목에 대한 조정과 감액분에 대한 복원요청으로 사료되는 바,
 - 산출기초중 교수학습자료개발, 행사용품 등¹⁰³⁾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한 이후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44〉 교육실습운영기반조성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계	261	269	△48	221	40
실 습 학 교 운 영 지 원	221	221	0	221	0
실습학기운영기반조성	40	48	△48	0	40

102) 교육실습생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지도·평가, 학생상담 등 학기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편한 교원양성과정으로, '22년도 시범운영 후 '28년도 전면 도입 예정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103)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08

- (운영지원)교수학습자료개발 1,500,000원×6종 = 9,000천원
- (운영지원)행사용품 400,000원×4회 = 1,600천원

□ **교육과정운영내실화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p.110)

- 중등교육과 소관 **교육과정운영내실화지원**은 '23년도 본예산안에 **교육과정 다양화지원**으로 26억 8,500만원을 신규 편성¹⁰⁴⁾한 것이나, 본예산안 심사시 전액 삭감된 바,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한국형바칼로레아(KB)기반조성**¹⁰⁵⁾으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을 수정하여 10억 2,000만원 순증편성 요청한 것임

〈표 4-45〉 교육과정운영내실화지원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한국형바칼로레아(KB) 기 반 조 성	1,020	2,685	△2,685	0	1,020

- 동 사업내용은 포괄적인 운영비 목을 구체화하고, 편성 규모를 조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이나, '23년도 본예산 심사시 소관 교육위원위원회로부터 ①기존 서울형 혁신학교 정책과의 유사성, ②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계 방안, ③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 인증과 연관성 부족 등이 지적된 바,
-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요예산을 본예산안과 비교하면, 26억 8,500만원에서 10억 2,00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여 예산규모만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104)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220

105) 미래사회 사회 변화 대비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 구축을 위해 국제 바칼로레아(IB, International Baccalauerte : 1968년 스위스 국제학교협회와 유네스코 협력 하에 설립된 독립적 비영리국제기구가 주관하는 초·중등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체제를 탐색·적용하는 교육사업

- 예산과목중 여비와 해외이전을 제외할 경우, 운영비, 업무추진비, 학교회계전출금을 감액편성하고, 사업기간이 당초보다 2개월 축소된 것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본예산 감액분을 복원요청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요예산의 편성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46〉 사업내용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제 1 회 추 경 안	' 2 3 년 도 본 예 산 안
사 업 내 용	한국형바칼로네아(KB)기반조성	교육과정다양화지원
사 업 기 간	'23. 3~12	'23. 1~12
사 업 대 상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소 요 예 산	1,020,900	2,685,480
산 출 내 역	운 영 비 780,900	운 영 비 1,467,400
	업 무 추 진 비 10,000	업 무 추 진 비 12,800
	학 교 회 계 전 출 금 230,000	학 교 회 계 전 출 금 500,000
	-	여 비 5,280
	-	해 외 이 전 700,000

(4) 평생진로교육국

□ 학교밖청소년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p.119)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소관 **학교밖청소년지원**은 '23년도 본예산안에 18억 9,8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사업내역중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8억 4,700만원이 '23년도 본예산안 심의 결과 전액 삭감된 바,

-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3년도 본예산 심사시 소관 교육위원회가 지적한 위원회 심사수당을 본예산안보다 감액하고, 교육참여수당 지급 대상인원도 소폭 축소한 7억 9,000만원을 순증편성 요청한 것임¹⁰⁶⁾

〈표 4-47〉 학교 밖 청소년지원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계	1,841	1,898	△847	1,051	790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운영	320	320	0	320	0
학 교 밖 청 소 년 교 육 참 여 수 당	790	847	△847	0	790
학 교 밖 청 소 년 지 원 사 업 운 영	478	478	0	478	0
학 교 밖 청 소 년 지 원 위 원 회	5	5	0	5	0
학 습 지 원 프 로 그 램	246	246	0	246	0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은 지난 '19년도에 신설 후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회보장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등록자 중 수당지급 요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 등 교육비, 진

106)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소요예산 산출내역('23년도 본예산안 대비)

① 심사수당 : 80,000원×7명×12회=6,720천원→(80,000원×4명×10회)+(60,000원×1명×10회)=3,800천원
 ② 교육참여수당 : (200,000원×250명×12월)+(150,000원×80명×12월)+(100,000원×80명×12월)=840,000천원
 →(200,000원×240명×12월)+(150,000원×70명×12월)+(100,000원×70명×12월)=786,000천원

로계발 문화체험비, 교육활동에 수반되는 교통비 및 식비 등(교육기자재 구매 및 의료비 불가)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최근 급여 지급방식 다양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한 바, ‘지급방식 추가의 경우는 변경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회신 확인됨¹⁰⁷⁾

〈표 4-48〉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원기준

학령기기준	월 지 급 액	1 년 기 준	지 급 방 식	비 고
초	100,000원	1,200,000원	청소년교통카드 (캐시비) 충전	’23년 서울페이 등의 지급방식 추가 예정
중	150,000원	1,800,000원		
고	200,000원	2,400,000원	체크카드 충전	현금인출 제한 및 클린카드 기능 탑재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2356 (’23. 2.10)

- 다만, 사업별 설명자료에 사업추진기간과 소요예산 산출기초를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을 추가경정예산편성전 기간인 금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이 관련 법령이나 회계질서에 적법한 사안인지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07)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4107 (’22.11. 3)

〈표 4-49〉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세		출	목	내	역	산	출	기	초	소	요	예	산	
		계										790,300		
	운	영	비	심	사	수	당	(80,000원×4명×10회) +(60,000원×1명×10회)				3,800		
		업	무	추	진	비	사	업	추	진	경	비	20,000원×5명×5회	500
		보	전	금	교	육	참	여	수	당			(200,000원×240명×12월) +(150,000원×70명×12월) +(100,000원×70명×12월)	786,000

□ **스쿨미투예방및학교회복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p.122)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소관 **스쿨미투 예방 및 학교회복지원**은 '23년도 본예산안에 6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¹⁰⁸⁾ 예산 심의 결과 △2억 9,200만원이 삭감된 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억 7,200만원을 증액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23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소관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한 **스쿨위드유 홈페이지 개선**은 미편성하고¹⁰⁹⁾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용역**은 증액편성 요청하여, '22년도의 경우 연 1회 실시한 전문업체위탁점검을 '23년도에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실시로 계획하여 소요예산이 증액편성 요청된 것으로 검토됨

〈표 4-50〉 스쿨미투예방 및 학교회복지원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계	603	623	△292	331	272
불 법 촬 영 예 방	408	408	△272	136	272
사 안 처 리 지 원 단 운 영	26	26	0	26	0
사안처리지원단운영(특별교부금)	26	26	0	26	0
성사안처리 및 회복교육지원	53	53	0	53	0
성 인 권 전 문 가 운 영	89	89	0	89	0
스쿨위드유 홈페이지개선	0	20	△20	0	0

108)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464

109)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

- 스쿨위드유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신고센터와 통합운영방안 제안

□ **학교안전망구축** (사업별 설명자료, p.125)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소관 **학교안전망구축**은 '23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생명 존중(자살예방교육)연수** △2억원이 삭감되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사업내용에 대해 1억 500만원을 순증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23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소관 교육위원회로부터 운영비의 포괄편성이 지적된 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교육부의 '학생자살예방 시행 계획'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비와 자살사안 발생교 대상 위기지원단 운영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4-51〉 학교안전망구축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계	2,418	2,512	△200	2,312	105
마음건강회복 힐링프로그램운영	50	50	0	50	0
배움터지킴이운영	970	970	0	970	0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연수	105	200	△200	0	105
생명존중교육 및 사안지원	62	62	0	62	0
생명존중위원회운영	4	4	0	4	0
초등학생등학교안심알림서비스운영지원	3	3	0	3	0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운영지원	22	22	0	22	0
학교 CCTV 설치 지원	1,200	1,200	0	1,200	0

□ **학교안전망구축(특별교부금)** (사업별 설명자료, p.128)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소관 **학교안전망구축(특별교부금)**은 5억 6,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23년 1월, 교육부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교부함에 따라,¹¹⁰⁾ 「지방재정법」 제45조¹¹¹⁾에 근거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우선 사용하고, 같은 회계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것임

〈표 4-52〉 학교안전망구축(특별교부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계	565	0	0	0	565
정신건강전문가학교방문지원	565	0	0	0	565
정신건강고위기학생치료비지원	0	0	0	0	0
학 생 위 기 문 자 상 담 망 운 영	0	0	0	0	0

110)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06 ('23. 1.10), “학생 건강정신 지원 관련 2023년 제1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교부금액 안내”

111)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통일교육활성화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p.131)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소관 **통일교육활성화지원**은 '23년도 본예산안의 경우, 화해와 평화로 가는 통일교육강화로 2,000만원을 편성¹¹²⁾하였으나, 소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 통일교육협의체운영 △1,500만원 등 소요예산 전액이 삭감된 바,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통일교육활성화지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서울학생통일관 운영지원을 위해 학교회계전출금 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53〉 통일교육활성화지원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계	5	20	△20	0	5
서울학생통일관운영지원	5	5	△5	0	5
통 일 교 육 협 의 체 운 영	0	15	△15	0	0

112)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577 「화해와평화로가는통일교육강화」

□ **무상급식** (사업별 설명자료, p.137)

-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소관 **무상급식**은 공·사립 각급학교 학생급식비('23년도 1~2월분)중 서울시 및 자치구 부담금 156억 8,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23년 1월,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¹¹³⁾ 「지방재정법」 제45조¹¹⁴⁾에 근거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우선 사용하고, 같은 회계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것임

〈표 4-54〉 무상급식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계	616,506	600,817	0	600,817	15,689
유치원식품관리비(서울시)	1,369	0	0	0	1,369
유치원식품관리비(자치구)	913	0	0	0	913
유치원인건비(서울시)	920	0	0	0	920
유치원인건비(자치구)	613	0	0	0	613
학교식품관리비(서울시)	4,192	0	0	0	4,192
학교식품관리비(자치구)	2,834	0	0	0	2,834
학 교 인 건 비 (서 울 시)	2,906	0	0	0	2,906
학 교 인 건 비 (자 치 구)	1,937	0	0	0	1,937
유 치 원 식 품 관 리 비	22,652	22,652	0	22,652	0
유 치 원 인 건 비	17,052	17,052	0	17,052	0
학 교 식 품 관 리 비	287,940	287,940	0	287,940	0
학 교 인 건 비	265,402	265,402	0	265,402	0
조리종사원대체인건비	7,768	7,768	0	7,768	0

113) 서울시, 친환경급식과-359 ('23. 1.11), 친환경급식과-369 ('23. 1.11)

114)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학교미세먼지관리** (사업별 설명자료, p.142)

-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소관 **학교미세먼지관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115)에 근거하여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등의 자문에 필요한 위원회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순증편성 요청한 것으로 '23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삭감된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 운영** △300만원을 복원 요청한 것으로 사료됨

〈표 4-55〉 학교미세먼지관리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계	22,250	22,250	△3	22,247	3
공 기 정 화 장 치 설 치	16,003	16,003	0	16,003	0
공 기 청 정 기 유 지 관 리 비	6,243	6,243	0	6,243	0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운영	3	3	△3	0	3

- 사업별 설명자료중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는 위원 수를 15명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산출기초는 학교실내공기질 개선위원회 위원수를 12명으로 하여 소요예산을 계상하고 있고, 위원 중 7명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확인된 바, 116)

〈표 4-56〉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위원회 운영 소요예산 산출기초

(단위 : 천원)

세		출	목	내	역	산	출	기	초	소	요	예	산
계													3,200
	운	영	비	일	반	수	용	비	100,000원×2회				200
				위	원	회	수	당	100,000원×12명×2회				2,400
	업	무	추	진	비	업	무	추	진	비	20,000원×15명×2회		

11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제5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학교 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16)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2580 ('23. 3.22)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¹¹⁷⁾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심의·편집·운영수당 포함) 지급이 불가함
- 특히,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자기 소관 사무”임에도 수당 예산을 산출기초에 포함하여 예산을 부적(不適)하게 편성요청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당 편성분은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위원수를 15명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위원수당은 12명분을 편성하고 있고,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15명으로 편성하고 있어 적정 인원을 확인하여 소요예산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117) 교육부예규 제75호 ('23. 1. 1.시행),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p.49

- 심사수당 :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심사(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심사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 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시도교육청(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 예시

- ① 서울교육청 본청 소속 공무원이 서울교육청 직속기관 사무 심사(심의) ➡ 심사수당 지급 불가
 - ② 수원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경기교육청 본청 사무 심사(심의) ➡ 심사수당 지급 불가
 - ③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이 부산교육청 본청 사무 심사(심의) ➡ 심사수당 지급 가능
 - ④ 전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충북교육청 본청 사무 심사(심의) ➡ 심사수당 지급 가능
- ※ 소속 시도교육청 밖에서 위원으로 심사(심의)한 경우에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임

□ **학교청소관리** (사업별 설명자료, p.145)

○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소관 **학교청소관리**는 공립초와 특수학교의 청소용역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 '23년도 본예산에는 356억 400만원을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예산액의 증감없이 세출목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변경하여, 집행방식을 당초 교육지원청별 통합계약에서 학교 단위 계약 또는 교육지원청별 통합계약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¹¹⁸⁾

〈표 4-57〉 학교청소관리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추경예산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편 성 내 역
계	46,357	46,357	0	
미 화 원 인 건 비	10,676	10,676	0	
학교청소용역비	35,681	35,681	0	운영비 ^{주1)} △356억 400만원 감액 → 학교회계전출금 ^{주2)} 356억 400만원 증액

주1) ①공립초등학교 △338억 1,000만원 (△1,000,000원×33,810실)

②공사립, 국립 특수학교 △16억 8,900만원 (△1,000,000원×1,689실)

③통합수수료 △1억 500만원 (△105,100,000원×1식)

주2) ①공립초·특수학교 347억 7,800만원 (1,000,000원×28,392실)+(900,000원×6,906실)+(1,000,000원+171교)

②사립특수학교 5억 8,000만원 (1,000,000원×464실)+(900,000원×128실)+(1,000,000원+1교)

③국립특수학교 2억 4,500만원 (1,000,000원×196실)+(900,000원×55실)

118)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3772 ('23. 3. 6) “2023년 학교 교실 청소용역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 사업기간 : 2023. 3. ~ 12월 말(10개월), ※ 본예산과 동일

- 사업대상 : 공립초, 특수학교(전학년) 일반교실, 특별교실, 관리실(36,141실)

- 청소내용 : 주2회 청소

- 지원기준 : (공통) 일반·특별교실당 실당 100만원, 관리실 실당 90만원
(차등) 36학급 이상 학교, 교당 100만원 추가 지원

- 총사업비 : 356억 8,100만원 ※ 수수료, 업무추진비 포함

- 집행방식 : 학교 단위 계약 또는 통합계약

- 예산과목 : (기존) 운영비 → (변경) 학교회계전출금(공사립)/전출금등(국립)

※ 이유 : 학교 실정 반영한 과업수행 및 청소용역 관리·감독 강화

- 동 사업은 「제3기('22~'26)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약실천계획」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¹¹⁹⁾, '22년 9월부터 추진하였고, '23년도 본예산에도 학교청소용역비 356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집행방식을 교육지원청 통합계약에서 학교 단위 계약 또는 통합계약으로 변경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정요청한 것으로 확인됨¹²⁰⁾

〈표 4-58〉 학교청소용역비 소요예산 경정요청 현황

(단위 : 천원)

세출목	내역	산출기초	소요예산
계			0
운영비	공립초등학교	$\Delta 1,000,000\text{원} \times 33,810\text{실}$	$\Delta 33,810,000$
	통합수수료	$\Delta 105,100,000\text{원} \times 1\text{식}$	$\Delta 105,100$
	특수학교	$\Delta 1,000,000\text{원} \times 1,689\text{실}$	$\Delta 1,689,000$
전출금등	국립학교	$(1,000,000\text{원} \times 196\text{실}) + (900,000\text{원} \times 55\text{실})$	245,500
학교회계전출금	공립학교	$(1,000,000\text{원} \times 28,392\text{실}) + (900,000\text{원} \times 6,906\text{실}) + (1,000,000\text{원} \times 171\text{교})$	34,778,400
	사립학교	$(1,000,000\text{원} \times 464\text{실}) + (900,000\text{원} \times 128\text{실}) + (1,000,000\text{원} \times 1\text{교})$	580,200

119)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680

○ 학교청소용역비

- 기간 : 2022. 9. ~ 2023. 2.
- 대상 : 공립초등학교 565교 및 특수학교 전체 32교
- 내용 : 학교 청소 용역비 지원
- 소요예산 : 11,342,500천원

120)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23481 ('22.12.19) 「학교 교실 청소용역 자원사업 개선 및 추진을 위한 의견 조사」

○ 추진상의 문제

- 사업추진방식(학교별 특성 및 의견반영 한계, 사업추진 준비기간 부족 등)
- 과업내용(청소 주기 주2일 수행 어려움, 청소 시간 부족 등)
- 청소인력 확보 및 현장관리(대규모 청소인력 확보 어려움, 업체의 현장관리 능력 부족 등)
- 근로환경 및 기타(휴게시설 부족, 기존 소규모 업체 생계 위협 항의, 담당자 업무 과중 등)

- 동 사업내용의 경우, 예산편성시부터 사업계획과 집행방식 등을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할 필요가 있으나, 본예산 편성 이후 수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집행방식을 통합계약에서 학교 단위 계약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사업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태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생 스마트기기 디벗 보급’ 추진시에도 같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방식을 ‘구매→렌탈→구매’로 두 차례나 변경한 사례가 있어 대규모 예산이 지속 투입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시 충분한 분석과 대응방안이 절대 부족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례로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4-59〉 연차별 학교청소용역 추진 목표('22~'26년)

(단위 : 교, 백만원)

구 분	2022년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학 교 급	초, 특수 (초 1, 2 제외) ^{주1}	초, 특수	초, 중, 특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각종 (전체 학교)
학 교 수	597	597	984	1,276	1,287
소요예산	11,343	35,676	42,612	58,620	59,07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3772 ('23. 3. 6) 「2023년 학교 교실 청소용역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주1) 「초1,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21년부터 초1,2 청소용역비 기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2021 ('20.12.30.)

(5) 교육행정국

□ 물품관리 (사업별 설명자료, p.153)

○ 교육재정과 소관 **물품관리**중 전자철판설치는 240억 3,000만원을 순증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내용은 '23년도 본예산안에 초 5·6학년,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2·3학년, 특수학교 등 1만 5,906학급을 대상으로 1,590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바,
-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중학교 2학년 총 2,403학급을 대상으로 240억 3,000만원을 순증편성 요청한 것임

〈표 4-60〉 물품관리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계	24,035	159,065	△159,060	5	24,030
물 품 관 리	5	5	0	5	0
전 자 철 판 설 치	24,035	159,060	△159,060	0	24,030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년도부터 미래교육환경구축을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3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사업의 실효성과 과도한 예산편성 등을 이유로 전액 감액 조정된 바 있음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디벗」과 연계하여 대상을 중학교 2학년으로 한정하는 등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정책연구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분석한 것으로 확인됨¹²¹⁾

121) 「스마트기기 활용 학습의 교육적 효과 분석」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2022-29

- 다만, 동 사업은 사용연한(내용연수 7년¹²²⁾)이 있는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는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투입의 규모와 적정시기 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표 4-61〉 '23년도 전자칠판 설치 기본 계획중 연도별 추진 변경 전·후

	1차 2021년	2차 2022년	3차 2023년	4차 2024년
변경 전 ('22년)	중1	중2· 고1· 특수	초 5, 중3 · 고2	초 6, 고3
' 2 3 년 본예산안	중1 (집행완료)	중2· 고1· 특수 (예산심의 결과 삭감)	초5 ~ 고3 전체 (예산심의 결과 삭감)	-
추 경 예 산 안	중1 (집행완료)	-	중2 (디벗사업과 연계)	미수립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3101('23. 2.10),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전자칠판 설치 추경 예산 편성 계획(안)”

122)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1-41호, '21.12.28)」 [별표1] “내용연수표(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 **건축시설관리일반** (사업별 설명자료, p.173)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건축시설관리일반**은 '23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소관 교육위원회회가 내진보강사업 홍보콘텐츠 제작비 △1억원과 학교석면제거사업운영 △4,100만원을 감액한 바,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학교석면제거사업운영** 4,120만원을 증액요청한 것으로 '23년도 석면 해체·제거 예정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관계자 전문교육, 석면모니터링단 운영 연수비, 강사비, 운영수당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4-62〉 건축시설관리일반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계	2,172	2,272	△141	2,131	41
각 종 위 원 회 운 영	118	118	0	118	0
기술직전문성신장 및 청렴제고연수	18	18	0	18	0
사 립 학 교 기 술 지 원	3	3	0	3	0
석 면 제 거 사 업 운 영	41	41	△41	0	41
시 설 관 리 일 반	1,932	1,932	0	1,932	0
외 부 전 문 가 참 여 안 전 점 검	58	58	0	58	0
내 진 보 강 사 업 콘 텐 츠 제 작 비	0	100	△100	0	0

□ **노후시설개선** (사업별 설명자료 p.179)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노후시설개선**은 '23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감액된 △378억 1,100만원¹²³⁾중 342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63〉 노후시설개선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세 부 사 업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노 후 시 설 개 선	752,628	756,228	△37,811	718,417	34,210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편성 요청한 사업은 방수공사·바닥개선·도장공사 7억 9,900만원과 **노후시설개선**¹²⁴⁾중 '23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삭감(△334억 1,100만원)된 학교 석면 해체 및 제거 사업 334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27년도까지 석면 전면 제거를 목표로 '23년도에는 간접사업(냉난방개선 등)과 연계하여 석면제거공사¹²⁵⁾를 진행할 것으로 사료됨

〈표 4-64〉 안전관리(석면제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2년도
	기 정 예 산 (A)	추경 증감 (B)	추 경 예 산 (A+B)	최 종 예 산
안 전 관 리 (석 면 제 거)	14,088	33,411	47,500	20,168

123) 기타사업 △24억원, 장애인편의시설 △20억원, 안전관리(석면제거) △334억 1,100만원

124)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내역

- 교육환경개선사업(12개) : 화장실개선(전면, 부분), 전기시설개선, 냉난방개선, 창호개선, 외벽개선, 소방시설개선, 방수공사, 바닥개선, 도장공사, 외부환경개선, 기타사업
- 안전관리(5개) : 내진보강, 샌드위치판넬제거, 드라이비트해소, 석면제거, 정밀점검
- 장애인편의시설(1개)

12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4169 ('22. 4.11), "2022년 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 Ⅲ.세부계획

□ **그린스마트스쿨운영** (사업별 설명자료, p.187)

○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그린스마트스쿨운영**은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¹²⁶⁾에 따라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 '23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관련 동의안이 부결¹²⁷⁾됨에 따라 '23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④BTL사업운영(△13억 4,800만원), ⑤미래학교조성지원(△1억 500만원), ⑥전환준비금(△4억 9,000만원)을 포함한 소요예산 전액(△63억 6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음

〈표 4-65〉 그린스마트스쿨운영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계	3,612	6,306	△6,306	0	3,612
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운영	211	938	△938	0	211
② 긴 급 시 설 보 수 비	3,090	3,090	△3,090	0	3,090
③ 사 전 기 획 용 역	310	334	△334	0	310
④ B T L 사 업 운 영	0	1,348	△1,348	0	0
⑤ 미 래 학 교 조 성 지 원	0	105	△105	0	0
⑥ 전 환 준 비 금	0	490	△490	0	0

-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3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내용중 일부를 선별하여 36억 1,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126) 교육부, 미래학교추진팀-564 ('21. 3. 5)

127) ① 의안번호: 371

② 안건명 :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

③ 안건제출 : 2022.10.17

④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부결 (2022.12.29)

- ①그린스마트미래학교운영은 '23년 3월, 모듈러 임시교사 체험시설¹²⁸⁾의 임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철거와 원상복구에 필요한 부대공사비(2억원)와 미래학교 검토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1,100만원)를 편성한 것이며¹²⁹⁾
- ②긴급시설보수비는 '23년도 본예산안과 동일한 30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 구성, 안전 및 에너지 효율화 등에 관한 사전 전략을 수립하는 절차인 ③사전기획용역은 '23년도 본예산안 대비 여비(△1,600만원)를 감액하여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동 사업은 지난 '22년 6월부터 시행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인 바, '22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검토하면, 18건의 사업이 '계약기간 미도래' 및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고이월 된 것으로 6개월의 사전기획 소요기간¹³⁰⁾과 사전절차(학부모 동의 절차)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고이월 발생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추가적인 소요재원을 확보할 경우, 기존 추진방법 등에 대한 수정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28) 모듈러 임시교사 체험시설(2개소)

- 강서관: 강서양천 제1발명교육센터 내(구 공진중 폐교부지)
- 강남관: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내

129) '23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소관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한 홍보영상 및 백서발간 등의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미편성

130) 서울특별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769 ('23. 2.10)

〈표 4-66〉 '22년도 사전기획용역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건 명	예산현액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이 월 사 유
창동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 전 기 획 용 역	41	21	19	0	계약기간 미도래
명신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 전 기 획 용 역	11	0	11	0	계약기간 미도래
상일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 전 기 획 용 역	17	0	12	4	계약기간 미도래
용마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 전 기 획 용 역	15	0	11	0	계약기간 미도래
안평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 전 기 획 용 역	44	19	19	5	사 전 절 차 지 연
종암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 전 기 획 용 역	44	0	38	5	계약기간 미도래
중랑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 전 기 획 용 역	44	0	38	5	계약기간 미도래
청량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 전 기 획 용 역	44	0	38	5	사 전 절 차 지 연
아현산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 전 기 획 용 역	44	0	38	5	사 전 절 차 지 연
대조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 전 기 획 용 역	44	0	29	14	사 전 절 차 지 연
문백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 전 기 획 용 역	44	0	39	4	사 전 절 차 지 연
백산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 전 기 획 용 역	44	0	40	3	계약기간 미도래
백운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 전 기 획 용 역	44	0	38	5	계약기간 미도래
서빙고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 전 기 획 용 역	44	0	39	4	계약기간 미도래
난곡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 전 기 획 용 역	44	0	39	4	계약기간 미도래
미양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 전 기 획 용 역	44	0	39	4	계약기간 미도래
삼선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 전 기 획 용 역	44	0	38	5	사 전 절 차 지 연
월곡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 전 기 획 용 역	44	0	38	5	계약기간 미도래

※ 자료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540 ('23. 1.18)

(6) 직속기관

□ 원격수업지원플랫폼구축 (사업별 설명자료, p.195)

○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원격수업지원플랫폼구축**은 ①서울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②뉴쌤 및 AI 시스템 구축, ③뉴쌤 및 AI 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 '23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소요예산 전액(△49억 7,1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②뉴쌤 및 AI 시스템 구축비 26억 200만원을 포함한 46억 1,800만원을 순증편성 요청한 것임

〈표 4-67〉 원격수업지원플랫폼구축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계	4,618	4,971	△4,971	0	4,618
① 서울형메타버스플랫폼구축및운영	1,288	1,500	△1,500	0	1,288
② 시스템구축비 (뉴쌤 및 AI)	2,602	2,742	△2,742	0	2,602
③ 시스템운영비 (뉴쌤 및 AI)	727	729	△729	0	727

○ 동 사업의 사업내용중 ①**서울형메타버스플랫폼구축및운영**은 교육공간(메타버스 교실, 상담실, 토의토론실 등), 창작공간(가상공간, 아바타 등) 등을 메타버스 서비스지원플랫폼에 구축·운영하고자 제작비가 포함된 운영비 12억 8,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원격수업지원플랫폼구축중 ②시스템구축비(뉴쌤및AI)**는 서울원격수업지원플랫폼 뉴쌤¹³¹⁾의 사용량 증가에 대응하고 인공지능특화 서비스(평가, 문해력, 심리·상담, 진로·진학) 기능을 추가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구축비 등 26억 200만원을 편성요청 한 것이며
- **③시스템운영비(뉴쌤및AI)**는 뉴쌤의 유지 보수사업을 위한 운영비로 총 7억 2,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131) **뉴쌤 (New Seoul School E-learnin Meta-platform)** : 학생, 교사, 학부모들을 사용자로 하여 양방향, 쌍방향 원격수업, 연수, 수업 및 출석관리, 영재교육컨텐츠 등의 자료활용수업이 가능한 학교 현장 맞춤형 원격교육 플랫폼

□ **인성진로교육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p.200)

○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인성진로교육지원**은 '23년도 본예산안에는 당초 1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8억 600만원이 감액된 10억 6,200만원이 의결된 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대학진학지도지원** 3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대학진학지도지원**의 경우, 제출된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동 소요예산의 내용을 “수험생 및 학부모 진학상담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보급 및 활용법 연수”로 기재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1,2,3학년 담당교사 및 진학담당교원이 수험생과 학부모 진학상담에 필요한 진학상담프로그램 개발 용역비로 확인되는 바,
- 사업내용을 파악하는데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실제사업내용이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여 지출 가능한 사안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표 4-68〉 **인성진로교육지원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계	1,496	2,046	△806	1,186	310
대 학 진 학 지 도 지 원	1,372	1,922	△806	1,062	310
서 울 진 로 진 학 정 보 센 터 운 영	67	67	0	67	0
학 생 상 담 자 원 봉 사 제	56	56	0	56	0

□ **먹거리생태전환교육** (사업별 설명자료, p.205)

- 학교보건진흥원 소관 **먹거리생태전환교육**중 **먹거리생태전환교육내실화** 지원은 학교급식현장에서 채식선택제 확대를 위한 채식대 설치·운영을 지원하고자 '23년도 본예산안에 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학교회계전출금 2억 9,2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4-69〉 먹거리생태전환교육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B-A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먹거리생태교육내실화지원	292	742	△742	0	292

- 채식대 설치 사업은 이미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으나, 성과나 만족도 등이 평가된 바 없이 '23년도 본예산안에 이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편성요청한 바,
- 채식대 설치·운영이 추가경정예산안에 긴급히 편성하여 추진할 만큼 시급한 사안으로 사료되지 않아, 기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평가·개선사항 보완 등이 선행된 이후 소요예산이 편성요청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V. 예산안 첨부서류 관련

- 「지방재정법」¹³²⁾은 **성인지예산서, 성과계획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의 단서조항¹³³⁾을 통해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재정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 성과계획서 등의 제출여부는 집행기관의 재량사항으로 사료되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¹³⁴⁾에는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변경 발생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132)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별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133)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34) 교육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2. 8) p.221

○ 성과계획서 보완 및 변경 ('23.1월~12월)

- 추경예산 등 예산변경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사업비를 변경된 예산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에 열거된 단서조항은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출여부에 대한 집행기관의 재량사항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부득이한 사유나 제출의 실익이 낮은 경우 등을 고려한 예외적인 사례로 인식하고 운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일반재원 2,384억 9,100만원¹³⁵⁾과 우선확정분 162억 5,400만원¹³⁶⁾을 증액요청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까지 9개월 이상 남겨 놓은 시점임을 고려하면,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정한 이후에는 불일치할 수밖에 없어 성인지예산서와 성과계획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지방재정법」¹³⁷⁾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등이 포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다년도 예산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중기재정계획 또한 수정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이후 경정되는 내역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¹³⁸⁾의 경우와 같이 첨부서류 생략시 사후 제출의무를 부여하도록 관련법에 대한 개정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35) '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중 감액된 34개 세세부사업(2,384억 9,100만원)과 급식시설개선(3억 6,200만원), 노후시설개선(8억원)

136) 무상급식(서울시전입금) 93억 8,900만원, 무상급식(기초자치단체전입금) 62억 9,900만원

137)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10. (생략)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14. (생략)

138) 「국가재정법」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정부는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또는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때에는 사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VI. 참고자료

〈표 6-1〉 세입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내역		
			금	액 비 율		증 감 액	비 율	일반재원	목 적 지 정 재 원	우 선 확 정
합 계			12,879,807	100	12,891,521	△11,714	△0.1	△27,968	16,254	0
중앙정부이전수입	보 통 교 부 금		6,362,253	49.4	6,390,221	△27,968	△0.4	△27,968	0	0
	특 별 교 부 금		120,072	0.9	119,507	565	0.5	0	565	0
	증 액 교 부 금		162,753	1.3	162,753	0	0	0	0	0
	국 고 보 조 금		21,225	0.2	21,225	0	0	0	0	0
	특별회계전입금		490,501	3.8	490,501	0	0	0	0	0
	계		7,156,804	55.6	7,184,207	△27,403	△0.4	△27,968	565	0
자치단체이전수입	법정	지 방 교 육 세	1,926,002	14.9	1,926,002	0	0	0	0	0
		담 배 소 비 세	261,992	2.0	261,992	0	0	0	0	0
		시 도 세	1,806,223	14.0	1,806,223	0	0	0	0	0
		학 교 용 지 부 담 금	1,988	0.0	1,988	0	0	0	0	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16,297	1.0	116,297	0	0	0	0	0
		교육급여보조금	10,424	0.1	10,424	0	0	0	0	0
		무 상 교 육 경 비 전 입 금	15,258	0.1	15,258	0	0	0	0	0
		소계	4,138,184	32.1	4,138,184	0	0	0	0	0
	비법정	광역자치단체	30,515	0.2	21,125	9,389	44.4	0	9,389	0
		기초자치단체	19,079	0.2	12,780	6,299	49.3	0	6,299	0
		소계	49,594	0.4	33,905	15,689	46.3	0	15,689	0
	계		4,187,778	32.5	4,172,089	15,689	0.4	0	15,689	0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8,067	0.1	8,067	0	0	0	0	0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319	0.1	1,319	0	0	0	0	0
	행 정 활 동 수 입		5,341	0.1	5,341	0	0	0	0	0
	자 산 수 입		33,573	0.2	33,573	0	0	0	0	0
	이 자 수 입		11,819	0.1	11,819	0	0	0	0	0
	기 타 수 입		74,331	0.5	74,331	0	0	0	0	0
	계		126,383	1.0	126,383	0	0	0	0	0
지 방 교 육 채			0	0.0	0	0	0	0	0	0
기타	전 년 도 이 월 금		1,385,345	10.7	1,385,345	0	0	0	0	0
	금 융 자 산 회 수		15,430	0.1	15,430	0	0	0	0	0
	계		1,400,775	10.8	1,400,775	0	0	0	0	0

〈표 6-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내 역		재 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일반재원	목 적 지 정	
									우선확정	추경판정
합	계	12,879,807	100.0	12,891,521	100.0	△11,714	△0.1	△27,968	16,254	0
유아및초중등교육		5,582,112	43.3	5,357,520	41.6	224,592	4.2	208,338	16,254	0
인적자원운용		67,403	0.5	67,170	0.5	233	0.3	233	0	0
교수-학습활동지원		649,742	5.0	595,011	4.6	54,731	9.2	54,166	565	0
교육복지지원		790,975	6.1	754,304	5.9	36,671	4.9	36,671	0	0
보건급식		830,815	6.5	814,468	6.3	16,347	2.0	658	15,689	0
학교재정지원관리		2,326,018	18.1	2,243,619	17.4	82,399	3.7	82,399	0	0
학교시설여건개선		917,159	7.1	882,948	6.9	34,211	3.9	34,211	0	0
평생교육		35,542	0.3	35,542	0.3	0	0.0	0	0	0
평생교육		35,542	0.3	35,542	0.3	0	0.0	0	0	0
교육일반		1,516,427	11.8	1,486,274	11.5	30,153	2.0	30,153	0	0
교육행정일반		181,553	1.4	151,400	1.2	30,153	19.9	30,153	0	0
기관운영		100,383	0.8	100,383	0.8	0	0.0	0	0	0
재무활동		1,234,491	9.6	1,234,491	9.5	0	0.0	0	0	0
예비비		322,350	2.5	588,809	4.6	△266,459	△45.3	△266,459	0	0
예비비및기타		322,350	2.5	588,809	4.6	△266,459	△45.3	△266,459	0	0
인건비		5,423,376	42.1	5,423,376	42.1	0	0.0	0	0	0
인건비		5,423,376	42.1	5,423,376	42.1	0	0.0	0	0	0

〈표 6-3〉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내 역		재 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일 재 발 원	목 적 지 정	
										우선확정	추경판정
합 계			12,879,807	100.0	12,891,521	100.0	△11,714	△0.1	△27,968	16,254	0
인 건 비	계		6,734,878	52.3	6,734,878	52.2	0	0.0	0	0	0
	공 무 원		4,496,371	34.9	4,496,371	34.9	0	0.0	0	0	0
	계약제교원근로자및 교육공무직원		927,005	7.2	927,005	7.2	0	0.0	0	0	0
	사 립 학 교		1,311,502	10.2	1,311,502	10.1	0	0.0	0	0	0
경 상 비	계		1,053,820	8.2	971,420	7.5	82,400	8.5	82,400	0	0
	교 육 행 정 기 관 비 운 영		39,303	0.3	39,303	0.3	0	0.0	0	0	0
	학 교 교육 운영비	소 계	1,014,517	7.9	932,117	7.2	82,400	8.8	82,400	0	0
		공 립	741,137	5.8	658,737	5.1	82,400	12.5	82,400	0	0
		사 립	273,380	2.1	273,380	2.1	0	0.0	0	0	0
사 업 비	계		3,534,268	27.4	3,361,923	26.1	172,345	5.1	156,091	16,254	0
	교 육 사 업 비		2,486,952	19.3	2,349,180	18.2	137,772	5.9	121,518	16,254	0
	시 설 사 업 비	소 계	1,047,316	8.1	1,012,743	7.9	34,573	3.4	34,573	0	0
		학교신증설	62,121	0.5	62,121	0.5	0	0.0	0	0	0
		일 반 시 설	916,118	7.1	881,907	6.9	34,211	3.9	34,211	0	0
		급 식 시 설	69,077	0.5	68,715	0.5	362	0.5	362	0	0
재 무 활 동	계		1,234,491	9.6	1,234,491	9.6	0	0.0	0	0	0
	지 방 채 상 환		52	0.0	52	0.0	0	0.0	0	0	0
	B T L 상 환		0	0.0	0	0.0	0	0.0	0	0	0
	기 금 전 출 금		1,234,439	9.6	1,234,439	9.6	0	0.0	0	0	0
예 비 비 및 기 타			322,350	2.5	588,809	4.6	△266,459	△45.3	△266,459	0	0